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가상자산과 관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재산에 추가하고,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변동 신고 시 가상자산의 거래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법률 제19470호, 2023. 6. 13. 공포, 12. 14.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취업심사대상기관의 확대, 선물신고에 관한 자료의 전자제출 및 취업이력공시를 위한 고유식별정보처리 근거 등을 이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가상자산변동사항신고서, 가상자산 거래잔고 자료 통보서 등 관련 서식을 신설하고, 그 밖에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재산등록 및 공개, 개인정보제공동의 관련 서식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공직자윤리위원회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 사항에 주식백지신탁제도 의무위반에 관한 조치를 추가함(안 제8조제2항제3호)
- 변동사항 신고 시 가상자산변동사항신고서에 대한 서식을 규정함(안 제13조제3항)
-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 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하고, 신설되는 서식을 반영함(안 제14조제1항 및 제5항)
- 공직윤리업무 전산화에 관한 내용을 현행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선물신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5조)
- 가상자산이 등록대상재산에 추가됨에 따라 신설되는 서식을 반영함(안 제22조)
-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를 포함함(안 제34조제2항)
- 징계의결요구 및 처리결과 통보에 주식백지신탁제도 의무위반에 관한 조치를 추가함(안 제40조제1항 및 제2항)
-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취업현황 조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2조제4호)

4.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4조의5제11항에 따른 조치

제13조제3항 중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에, 가상자산변동 사항신고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자료”를 “금융자료(가상자산자료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8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디스켓·디스크에 입력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를 각각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및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디스켓·디스크에 입력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

여”를 각각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로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공직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물 신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중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8호의2서식”으로,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에 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8조의2제2항제4호 및 제22조”를 각각 “법 제8조의2제2항제4호, 제14조의5제11항제3호 및 제22조”로 한다.

제4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취업 현황 조사에 관한 사무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호의4서식까지 및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5호

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0호서식부터 별지 제34호서식까지, 별지 제34호의1서식, 별지 제35호서식부터 별지 제44호서식까지, 별지 제44호의1서식 및 별지 제44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5호서식, 별지 제48호서식부터 별지 제54호서식까지, 별지 제56호서식, 별지 제58호의2서식 및 별지 제59호서식부터 별지 제61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업심사대상기관인 사기업체에 관한 적용례) ① 제34조제2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제6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을 고시한 이후 취업하려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최초 재산 등록 신고서

등록의무자	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소속	
	직위(직급 등)	재산등록기준일	
	주소(주택)	거주형태	
	주소(직장)		
	전화번호(주택)	(직장)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등록사항(해당 항목에 "√" 표시)

재산등록사항	그 밖의 사항
<input type="checkbox"/> 부동산 <input type="checkbox"/>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input type="checkbox"/> 현금·수표 <input type="checkbox"/> 예금 <input type="checkbox"/>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input type="checkbox"/> 증권 <input type="checkbox"/> 채권 <input type="checkbox"/> 채무 <input type="checkbox"/> 금·백금 <input type="checkbox"/> 보석류 <input type="checkbox"/> 골동품·예술품 <input type="checkbox"/> 회원권 <input type="checkbox"/> 지식재산권 <input type="checkbox"/>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input type="checkbox"/>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input type="checkbox"/> 가상자산 <input type="checkbox"/> 재산등록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친족 등록 여부 <input type="checkbox"/> 공개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승진] <input type="checkbox"/> 비공개

본인은 공직자로서 명예를 걸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서약하며, 「공직자윤리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 재산을 별지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등록의무자

(서명 또는 인)

법원행정처장 귀하

기재요령

1.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십시오.
2. 거주형태는 ‘자가, 전월세, 기숙사, 관사, 부모집, 친척집 등’ 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1. 친족사항(등록의무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일련 번호	성명	관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고지 거부	등록 대상	직업	비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직계존속(부모) 중 사망하신 분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 모

※ 배우자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혼 이혼 사별

※ 자녀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대상 자녀 없음

기재요령

- 본인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등록재산의 유무나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기재하십시오.
 ※ 친부모가 아닌 계부·모, 양부·모, 계자·녀, 양자·녀, 며느리, 형제자매 등은 직계존비속이 아니므로 재산등록 대상이 아님
- ‘고지거부’란: 「공직자윤리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직계존속·직계비속의 경우에는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3년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등록대상’란: 배우자, 고지거부 허가를 받지 않은 직계존속·직계비속은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직업’란: 직장명·직위, 학교명·학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 ‘비고’란: 친족별로, 주소지에 대한 권리의 종류가 소유권이나 전세권이 아닌 경우 그 권리의 종류나 거주형태(예:관사, 기숙사, 친척집 등)를 기재하십시오.

2. 최초재산등록신고 총괄표

재산항목	관계	권리자	권리종류	가액 (실거래가격)	형성과정	비고
▶ 토지(소유권·지상권·전세권)(소계)						
				()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기타:	
				()		
▶ 건물(소유권·전세권)(소계)						
				()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기타:	
				()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		
				()		
▶ 현금(수표 포함)(소계)						
▶ 예금(보험 포함)(소계)						
▶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소계)						
▶ 증권(주식·국채·공채·회사채·백지신탁·주식매수선택권 등)(소계)						
			기타 비상장주식 (법 제4조제3항 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취득일자: ·취득경위: ·기타:	
▶ 채권(소계)						
			사인 간 채권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기타:	

▶ 채무(소계)						
			사인 간 채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일자: • 취득경위: • 기타: 	
▶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소계)						
				()		
				()		
▶ 보석류(소계)						
				()		
				()		
▶ 골동품 및 예술품(소계)						
				()		
				()		
▶ 회원권(소계)						
				()		
▶ 지식재산권						
▶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소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일자: • 취득경위: • 소득원: • 기타: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가상자산(소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일자: • 취득경위: • 소득원: • 기타: 	
▶ 고지거부 사항						
총계						

※ 뒤에 나오는 재산항목별 기재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1. 재산항목

- 재산종류별로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되, 다음의 권리명세를 기재하십시오.
 - ① 토지 : 소재지·면적 등을 기재하십시오(임야·전·답·대지·잡종지 등).
 - ② 건물 : 소재지·면적 등을 기재하십시오(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상가·빌딩·오피스텔·사무실 등).
 - ※ 미입주 분양아파트인 경우에도 기재하십시오.
 - ③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 '4.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의 작성방법 참조
 - ④ 현금(수표 포함)
 - ⑤ 예금(보험 포함) : 개인별·예탁기관별로 예탁기관명·계좌번호 등을 기재하십시오(파생상품증거금 포함).
 - ⑥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 개인별·예탁기관별로 예탁기관명·계좌번호 등을 기재하십시오.
 - ⑦ 증권 : 예탁기관·종목명·보유량 등을 기재하십시오[예 : ○○증권 ○○전자(보유량 100주)].
 - ⑧ 사인 간 채권 : 채무자명과 연락처(주소·전화번호 등)를 기재하십시오.
 - ⑨ 채무 : 금융기관 채무는 은행명·계좌번호를, 사인 간 채무는 채권자명과 연락처를, 건물임대 채무는 물건 주소를 기재하십시오.
 - ⑩ 금·백금 : 종류·함량·중량 등을 기재하십시오.
 - ⑪ 보석류 : 보석의 종류·크기·색상 등을 기재하십시오.
 - ⑫ 골동품·예술품 : 종류·크기·작가 및 제작연대 등을 기재하십시오.
 - ⑬ 회원권 : 발행인, 회원권 번호 등을 기재하십시오.
 - ⑭ 지식재산권 : 명칭·등록번호·저작물의 종류 등 구체적 권리명세를 기재하십시오.
 - ⑮ 합명·합자·유한회사의 출자지분 : 회사명, 출자금액, 지분비율, 재산등록 기준일 이전 최근 사업연도의 그 회사 결산서상의 연간매출액을 기재하십시오.
 - ⑯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법인명, 출연재산, 보유직위 등을 기재하십시오.
 - ⑰ 가상자산 : 가상자산명 또는 가상자산예치금(가상자산 외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 예치하고 있는 원화 등 법정화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재하십시오.
 - ※ 외국 거래소의 가상자산예치금의 경우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된 금액을 기재

2. 관계 및 권리자

- 본인과의 관계 및 친족의 성명을 기재하십시오.
-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직계존속·직계비속도 '고지거부 사항'란에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한 후 '비고'란에 고지거부 사유 및 고지거부 허가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예 : 독립생계유지, 2007. 3. 3.).

3. 권리종류

- 부동산(토지·건물) :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사실상 소유권·분양권 등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 자동차·광업권·어업권·건설기계·선박·항공기
- 현금 : 자기앞 수표 포함
- 예금 : 예금의 종류를 기재하십시오(예 :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보험, 공제, 수익증권 등).
-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 예금의 종류를 기재하십시오.
- 증권 : 상장주식·비상장주식·국채·공채·회사채·백지신탁·주식매수선택권 등
- 채권 : 사인 간 채권 등
- 채무 : 금융기관 채무, 사인 간 채무, 건물임대 채무 등
- 금·백금 : 금·백금의 종류 또는 제품명
- 보석류 : 보석의 종류(다이아몬드 등) 또는 제품명
- 골동품 및 예술품 : 도자기·서양화·동양화·서예·공예·수예·조각·칠기 등
- 회원권 : 골프회원권, 헬스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
- 지식재산권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 등
-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가상자산 : 가상자산·가상자산예치금 등

4. 가액

- '가액'란은 재산등록 기준일을 기준으로 최근 공시된 공시지가 등 평가액을 등록하고, 평가액이 없거나 사실상 확인할 수 없는 재산의 경우 실거래가격을 등록하되 재산항목별 최초재산등록신고서의 기재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하십시오.
- () 안에는 실거래가격(실매입액)을 기재하십시오.

5. 형성과정

- 재산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부동산(토지·건물), 증권 중 같은 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기타 비상장주식) 및 주식매수선택권, 사인 간 채권, 사인 간 채무,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가상자산에 대하여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6. 총계

- 재산항목별 가액 또는 실거래가격을 합산하여 적되, 증권 중 주식매수선택권, 지식재산권,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총계에 반영하지 마십시오.

3. 부동산

가. 토지(소유권·지상권·전세권)

일련 번호	권리자	관계	권리의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	가액 (천원)	실거래가격 (천원)	형성과정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일자: • 취득경위: • 소득원: • 기타: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대지 위에 건물이 있으며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 '가. 토지' 항목이 아닌 '나. 건물' 항목에 기재하십시오. 대지 위에 건물이 있으나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에는 대지 소유자의 경우 대지는 '가. 토지' 항목에 기재하시고, 건물 소유자의 경우 건물은 '나. 건물' 항목에 기재하십시오.
3. ① 등기명의인이 아니면서 사실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상속 중인 재산 등) '비고'란에 "사실상 소유"라고 표시하고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 및 관계를 기재하며, ② 본인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타인 소유인 경우(문중재산 등)에도 등록하고 '비고'란에 사실 관계를 기재하십시오.
4. '권리의 종류'란 기재요령
 -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사실상 소유권 또는 분양권을 기재하고, 미등기 권리는 '비고'란에 "등기 미완료"라고 표시하십시오.
5. '지목'란 기재요령
 -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지·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溜池)·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 등으로 표시하십시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6. '가액'란의 가액산정방법 및 기재요령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면적(㎡)으로 산정한 금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적고, 둘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을 기재하십시오.
 -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지료·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의 금액을 기재하십시오.
 - 분양권의 경우 '가액'란에 총 납부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총 분양가액을 기재하십시오.
 - ※ 최초 신고 시 분양권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격'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7. 공동소유 토지인 경우
 - '면적', '가액'란에는 소유지분을 등록하고, '비고'란에는 전체지분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유", "합유" 등 공동소유의 형태를 표시하십시오.
8.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 있는 경우
 - 매도한 경우: 매수자가 잔금은 완납하였더라도 본인이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면 그 재산을 등록하십시오.
 - 매입한 경우: 중도금을 지급한 때부터 등록하며 '가액'란에 지급한 총금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관계와 총매입액을 기재하십시오.
 - ※ 다만, 계약금만 주고받은 경우에는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9. 외국 소재 부동산은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적고 비고란에 외화종류(달러, 유로, 파운드 등)를 기재하십시오.
10.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취득일자 : 매입일, 상속일, 증여일 등
 - 취득경위 : 목적, 방법(매입·상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상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 소득원 :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토지를 취득한 자금 출처
 - 기타 :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3. 부동산

나. 건물(소유권·전세권·분양권 등)

일련 번호	권리자	관계	권리의 종류	소재지	건물 면적 (㎡)	대지 면적 (㎡)	종류 및 용도	가액 (천원)	실거래가 격(천원)	형성과정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일자: • 취득경위: • 소득원: • 기타: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권리의 종류'란에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전세권(임차권)·사실상 소유권 또는 분양권을 기재하며, 미등기 권리는 '비고'란에 "등기 미완료"라고 표시하십시오.
3. ① 등기명의인이 아니면서 사실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상속 중인 재산 등) '비고'란에 "사실상 소유"라고 표시하고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 및 관계를 기재하며, ② 본인명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타인 소유인 경우(문중재산 등)에도 등록하고 '비고'란에 사실관계를 기재하십시오.
4. 면적은 대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제곱미터(㎡)로 환산하여 기재하십시오(1평은 3.3㎡로 계산).
5. '종류 및 용도'란 기재요령
 - 종류 : 일반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빌딩 등
 - 용도 : 주택·상가·사무실·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 등
6. 가액산정방법 및 기재요령
 - ① 주택은 '가액'란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공동주택가격 및 개별주택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적고, 둘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을 기재하십시오.
 - ② 상가·빌딩·오피스텔, 그 밖의 건물은 '가액'란에 대지가액과 건물가액을 별도 산정하여 합산한 금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적고, 둘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을 기재하십시오.
 - 대지가액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면적(㎡)"으로 산정
 - ※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
 - 건물가액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공정가액(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 등) 중 최고가액"으로 산정
 - ③ 전세권, 임차권인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의 금액을 '가액'란에 기재하십시오.
 - ④ 분양권의 경우 '가액'란에 총납부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총분양가액을 기재하십시오
 - ※ 최초 신고 시 분양권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격'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7. 공동소유 건물인 경우 '면적', '가액'란에는 소유지분을 등록하고, '비고'란에는 전체지분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유", "합유" 등 공동소유의 형태를 표시하십시오.
8.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 있는 경우
 - 매도한 경우 : 매수자가 잔금은 완납하였더라도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면 그 재산을 등록하십시오.
 - 매입한 경우 : 중도금을 지급한 때부터 등록하며, '가액'란에 지급한 총금액을 적고, '비고'란에 계약관계와 총매입액을 기재하십시오.
 - ※ 다만, 계약금만 주고받은 경우에는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9. 무허가건물의 경우
 - 허가나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등록해야 하며, '가액'란에는 실매입액이나 사실상 거래가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무허가건물"이라고 기재하십시오.
10. 주택·상가 등 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또는 임대보증금 등은 "10. 채무" 항목에 기재하십시오.
11. 콘도미니엄은 부동산 소유권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도 "부동산(건물)" 항목에 신고하지 말고 "회원권" 항목에 신고하여야 하며, 면적은 비고란에 기재하십시오.
12. 외국 소재 부동산은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기재하고 '비고'란에 외화종류(달러, 유로, 파운드 등)을 기재하십시오.
13.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취득일자 : 매입일, 상속일, 증여일 등
 - 취득경위 : 목적, 방법(매입·상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상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 소득원 :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토지를 취득한 자금 출처
 - 기타 : 그 밖에 형성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

4.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일련 번호	권리자	관계	권리의 종류	권리의 명세	가액 (천원)	실거래가격 (천원)	형성과정	비고

기재요령

-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 '권리의 종류'란에는 광업권·어업권 및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권 또는 저당권 등으로 기재하십시오.
- '권리의 명세'란 기재요령
 - 광업권·어업권 : 광물의 종류 또는 어업면허의 종류, 소재지, 존속기간 등을 기재하십시오.
 - 자동차 : 차명·제작연도·배기량·차량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십시오.
 - 건설기계 : 기종명·제작회사·제작연도·건설기계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십시오.
 - 선박 : 종류·용도·선박 명·총 톤수·건조연도·선박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십시오.
 - 항공기 : 기종·형식·제작자·제작연도 등을 기재하십시오.
- 가액산정방법 및 기재요령
 - 광업권, 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는 '가액'란에 「지방세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나 「광업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문가의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적고, 둘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을 기재하십시오.
 -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 동산에 관한 권리는 '가액'란에 다음의 평가액(이하 "평가액"이라 한다)으로 등록하십시오. 이 때 가액은 번호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다만, 평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실거래가격을 기재하십시오.
 - 자동차 : ① 자동차보험의 차량기준가액 ② 「지방세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③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
 - 건설기계 : ① 「지방세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
 - 선박 : ① 선박보험상 선박가액 ② 「지방세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③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
 - 항공기 : ① 「지방세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

※ '비고'란에 가액산정방법 기재(예: 자동차보험의 차량기준가액, 시가표준액, 실거래가격)
- 권리를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지분을 기재하고 "공유", "합유" 등 공동소유의 형태를 표시하십시오.
-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재산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5. 현금(수표 포함)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보유액(천원)	형성과정	비고

기재요령

-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 소유자별로 합계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하며, 현금과 수표는 합산하십시오.
-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현금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 '비고'란에는 현금을 보유하게 된 사유를 기재하십시오.

6. 예금(보험 포함)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예탁 기관	예금의 종류	계좌번호	개설일	만기일	보유액 (천원)	형성과정	비고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소유자별로 예금의 합계액(「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포함)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등록대상자의 모든 계좌를 등록하되,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은 별도의 항목에 등록하십시오.
 - * 계좌별 1천만원 이상이 아닙니다.
3. '예금의 종류'란에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저축예금 및 양도성예금증서(CD), 저축성이 가미된 보험(100퍼센트 보장성보험만 제외)·수익증권(펀드 등)·금융투자기관에 예탁한 투자자에탁금(파생상품위탁증거금 포함)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등록하여야 하며, 각종 공제회, 상조회 불입금도 신고대상입니다.
 - 사실상 등록대상자 소유가 아니라도 등록대상자 명의로 되어 있으면 신고하여야 하며, '비고'란에 친목회비, 동창회비 등 사실관계를 기재하십시오.
 - 신탁회사의 금전신탁 등 한 통장으로 여러 계좌를 동시에 거래하는 경우에는 계좌별로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 사모펀드의 경우 '예탁기관'란에 '자산운용사', '예금의 종류'란에 '펀드명', '비고'란에 '사모펀드유형'(예 : 전문투자형 또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을 기재하십시오.
4. '보유액'란에는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적립된 금액 또는 평가금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는 "만기계약금액, 동창회비, 친목회비, 문중회비" 등 특이사항을 기재하십시오.
5. 파생상품증거금의 경우에는 '비고'란에 파생상품거래의 대상물, 계약금액, 최종거래일 등 권리·의무사항을 간략히 기재하십시오.
6. 외화예금은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기재하고 '비고'란에 외화종류(달러, 유로, 파운드 등)를 기재하십시오.
7.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예금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7.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예탁 기관	예금의 종류	계좌번호	개설일	만기일	보유액 (천원)	형성과정	비고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예금의 종류'란에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저축예금 및 양도성예금증서(CD), 저축성이 가미된 보험(100퍼센트 보장성보험만 제외)·수익증권(펀드 등)·금융투자기관에 예탁한 투자자에탁금(파생상품위탁증거금 포함)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등록하십시오.
3. '보유액'란에는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적립된 금액 또는 평가금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는 해당 계좌가 수입용인지 지출용인지 기재하십시오.
4.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예금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8. 증권(주식·국채·공채·회사채·백지신탁·주식매수선택권 등)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증권의 종류	예탁기관 (법인명)	발행인 (종목명)	행사가격	수량	가액 (천원)	형성과정	비고
				계좌번호 (법인등록 번호)	종목코드	행사기간				
			기타 비상장주식 (법 제4조제3항 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						· 취득일자: · 취득경위: · 소득원: ·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 취득일자: · 취득경위: · 기타:	

기재요령

-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 소유자별 증권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등록대상자의 모든 계좌의 증권을 등록하십시오.
※ 주식매수선택권은 합계액에 관계없이 기재하십시오.
- ‘증권의 종류’란 기재요령
 - 상장주식·비상장주식(제3시장주식, 기타 비상장주식)·국채·공채·회사채·백지신탁·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중 해당되는 항목을 기재하십시오.
 - 금융투자상품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에 대한 투자금은 주식으로 등록하고, 같은 조 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펀드 등)은 "6. 예금" 항목에 등록하십시오.
- ‘예탁기관(법인명)’ 및 ‘계좌번호(법인등록번호)’란: 증권의 종류가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만 법인명과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십시오.
- ‘발행인(종목명)’란: 증권의 종류가 채권인 경우 발행인(예: 기획재정부, 경상북도, ○○철강)을 기재하고, 주식인 경우(주식매수선택권 포함) 종목명(예: ○○증권, ××전자)을 기재하십시오.
- ‘종목코드’란: 증권의 종류가 주식인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 ‘행사가격’(1주당)과 ‘행사기간’란(예: 2007. 1. 1. ~ 2008. 12. 31.): 증권의 종류가 주식매수선택권인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 가액산정방법
 - 원칙적으로 증권의 가액산정은 액면가로 합니다.
 - 다만, 주식 중 한국거래소 상장주식은 재산등록 기준일 최종가격(재산등록 기준일 이전에 거래가 마감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최종가격)으로 산정하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재산등록 기준일의 기준가(거래량가중평균가를 말하며, 재산등록 기준일 전에 거래가 마감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기준가)로 산정하며, 최종가격 및 기준가의 기준일을 각각 ‘비고’란에 기재하십시오.
 -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4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기타 비상장주식)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가액을 산정하십시오.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을 제출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및 제3호 본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호의4서식(별지 제1호의4서식은 해당 법인의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로 대신할 수 있음)을 제출하십시오.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비고’란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고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액면가로 신고하십시오.
- 주식매수선택권은 지급받을 주식의 수량을 기재하되, 지급받을 주식의 상장주식인 경우에는 ‘가액’란에 현재시가를 기재하고,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가액’란에 행사가격을 기재하십시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가액은 총괄표상 총계에는 합산하지 마십시오.
※ 주식선택권의 일종인 스톡어워드(stock award)도 등록대상입니다.
-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보유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가액’란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계약 체결금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 여부를 기재하며, 다음 변동신고 시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된 사항을 등록하십시오.
-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증권의 종류’가 기타 비상장주식(같은 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 및 주식매수선택권인 경우 해당 증권에 대한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취득일자: 거래계약일, 주주명부 등재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 등
 - 취득경위: 목적, 방법(매입·상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상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 소득원: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증권을 취득한 자금 출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9. 채권

일련 번호	채권자	관계	채권의 종류	채권액 (천원)	발생일	만기일	채무자		형성과정	비고
							채무자명	주소		
			사인 간 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일자: • 취득경위: • 소득원: • 기타: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채권자별로 채권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하되, 반드시 건별로 구분하여 따로 기재하십시오.
3. '채권의 종류'란에는 사인 간 채권, 기타로 기재하십시오.
4. 주택이나 그 밖의 부동산에 설정한 부동산의 전세권(임차권)은 "3. 부동산" 항목에 기재하고, "9. 채권" 항목에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5. 사인 간의 채권인 경우에는 '주소'란에 채무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십시오.
6.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채권의 종류'가 사인 간 채권인 경우에는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취득일자 : 계약이체일, 차용증상 대여일 등
 - 취득경위 : 채무자와의 관계, 발생사유 등
 - 소득원 :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등 해당 채권의 자금 출처
 - 기타 :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10. 채무

일련 번호	채무자	관계	채무의 종류	채무액 (천원)	계좌 번호	발생일	만기일	채권자		형성과정	비고
								채권자명	주소		
			사인 간 채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일자: • 취득경위: • 기타: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채무자별로 채무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하되, 반드시 건별로 구분하여 따로 기재하십시오.
3. 채무의 종류
 - 금융채무 :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 사인 간 채무
 - 건물(또는 토지) 임대 채무
4. 금융채무인 경우에는 계좌번호를 해당란에 기재하고, '채권자명'란에 "금융기관명"을 기재하십시오.
5. 소유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등은 이 곳 "10. 채무" 항목에 기재하고, '비고'란에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등으로 표시하십시오.
6. 사인 간 채무인 경우에는 '주소'란에 채권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십시오.
7.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채무의 종류'가 사인 간 채무일 경우 취득일자·취득경위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취득일자 : 계약이체일, 차용일 등
 - 취득경위 : 채권자와의 관계, 채무의 사용목적 등
 - 기타 :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11.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종류	합량	보유중량 (g)	가액 (천원)	실거래가격 (천원)	형성과정	비고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소유자별로 금 및 백금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하십시오.
3. '종류'란에는 금·백금의 종류 또는 금·백금 제품명을 기재하되, 보석류에 붙어 있는 금·백금은 "12. 보석류" 항목에 기재하고, "11. 금 및 백금" 항목에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4. '가액'란에는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시장가격(매도가격)×보유중량(g)"을 기재하십시오.
○ 매매 등 거래를 통하여 구입한 재산에 대해서는 '실거래가격'란에 실매입액 등을 기재하십시오.
5.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금·백금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12. 보석류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종류	크기	색상	가액 (천원)	실거래가격 (천원)	형성과정	비고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소유자별로 품목당 보석류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하십시오.
3. '종류'란에는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진주목걸이 등 보석의 종류 또는 보석제품의 종류를 기재하십시오.
4. '가액'란에는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전문가 등의 평가액을 기재하되, 평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실거래가격"을 해당란에 기재하십시오.
○ 매매 등 거래를 통하여 구입한 재산에 대해서는 '실거래가격'란에 실매입액 등을 기재하십시오.
○ '비고'란에는 평가액을 산정한 전문가·전문가집단의 이름 또는 상호명과 그 연락처 등을 기재하십시오.
5.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보석류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13. 골동품 및 예술품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종류	작품 명세				가액 (천원)	실거래가격 (천원)	형성과정	비고
				품명	크기 (cm)	작가	제작 연대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골동품 또는 예술품의 품목당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하십시오.
3. '종류'란에는 도자기·회화(동양화·서양화·유화·유채화·판화 등)·서예·공예·조각·수예·철기 등 골동품 및 예술품의 종류를 기재하십시오.
4. '품명'란에는 작품명과 작품의 특기사항을 기재하십시오.
5. '크기'란에는 가로×세로×높이를 센티미터(cm)로 기재하십시오.
6. '가액'란에는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전문가 등의 평가액을 기재하되, 평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실거래가격"을 해당란에 기재하십시오.
 - 매매 등 거래를 통하여 구입한 재산에 대해서는 '실거래가격'란에 실매입액 등을 기재하십시오.
 - '비고'란에는 평가액을 산정한 전문가·전문가집단의 이름 또는 상호명과 그 연락처 등을 기재하십시오.
7.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골동품·예술품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14. 회원권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종류	발행인	회원권번호	소재지	가액 (천원)	실거래가격 (천원)	형성과정	비고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골프·헬스·콘도미니엄 등 회원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회원권당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하십시오.
 - 콘도미니엄은 부동산 소유권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도 부동산에 신고하지 말고 '회원권'란에 신고하여야 하며 면적은 '비고'란에 기재하십시오.
3. '소재지'란에는 회원권이 있는 곳(등기가 되어 있는 곳)을 기재하십시오.
4. 회원권은 취득가액을 '가액'란에 적되, 골프회원권은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적고, 둘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을 기재하십시오.
5.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회원권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15. 지식재산권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종류	권리의 명세	소득금액 (천원)	형성과정	비고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소유자별로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 등록하십시오.
○ 등록대상은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이므로 소유만 하고 소득이 없는 것은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3. '종류'란에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 등을 기재하십시오.
4. '권리의 명세'란에는 발명(고안)의 명칭 및 등록번호, 저작물의 종류, 권리의 존속기간 등 지식재산권의 종류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십시오.
5. '소득금액'란에는 지식재산권으로 인하여 생긴 연간소득금액을 기재하고, 소득원인행위 등을 '비고'란에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6.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취득일자·취득경위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16.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일련 번호	출자자	관계	회사명	대표자	자본금	출자가액	회사연간 매출액(천원)	형성과정	비고
			소재지	영업종류	설립일	출자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일자: • 취득경위: • 소득원: • 기타: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출자가액'란에는 출자한 금액을, '출자지분'란에는 총자본금에 대한 그 지분비율을 기재하십시오.
○ 합명·합자·유한회사가 아닌 개인사업체는 이 항목의 기재대상이 아니며 사업으로 인하여 등록대상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예금, 유가증권, 채권, 채무, 부동산 등의 보유 형태에 따라 해당항목에 등록하십시오.(상점에 있는 상품, 가축 등은 등록대상은 아니나 재산변동 사항의 소명 등을 위해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에 준하는 권리로 등록 가능)
3. '회사연간매출액'란에는 재산등록 기준일 이전 최근 사업연도의 그 회사 결산서상의 연간매출액을 기재하십시오.
4.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취득일자 : 출자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재일 등
○ 취득경위 : 회사와의 관계, 출자목적 등
○ 소득원 :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출자지분의 자금 출처
○ 기타 :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17.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일련 번호	출연자	관계	출연재산 (천원)	보유직위	법인명칭	대표자	형성과정	비고
					소재지	목적사업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비영리법인이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그 밖에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말합니다.
3. '출연재산'란에는 출연금액 또는 출연재산을 기재하십시오.
4. '보유직위'란에는 등록의무자가 비영리법인에서 보유하는 직위와 담당직무를 기재하십시오.
5.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출연재산의 출연일자·출연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18. 가상자산(가상자산예치금 포함)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거래 소명	가상 자산명	심볼	가격	수량	가액 (천원)	형성과정	비고
					종목 코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일자: • 취득경위: • 소득원: • 기타: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소유자별로 금액에 관계없이 보유한 모든 가상자산의 수량 및 가액을 신고하십시오.
3. '거래소명'란 작성방법
 - 국내·외 거래소의 경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하목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등록된 정식 명칭을 기재하십시오.
 - 외국 거래소의 경우 외국 거래소의 정식 명칭을 기재하십시오.
 - 개인 간 교환·매매 등의 경우
 - 개인 간 교환·매매 등 거래소를 거치지 않은 경우 '기타'를 적고 형성과정에 상대방의 성명과 취득·상실일자, 거래금액, 교환 매물 등을 기재하십시오.
 - 기업 등의 에어드랍 등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된 경우 '기타'를 적고 형성과정에 배분주체(거래소·기업 등)의 명칭과 취득일자 등을 기재하십시오.
 - 이 외 거래소를 거치지 않은 매매·교환·이전 등의 경우 '기타'를 적고 형성과정에 보유 경위를 기재하십시오.
4. '가상자산명'란 작성방법
 - 국내·외 거래소 및 개인이 거래한 가상자산의 정식 명칭을 기재하십시오.
 - 가상자산예치금(가상자산 외에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 예치하고 있는 원화 등 법정화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가상자산 항목에 '가상자산예치금'으로 등록하십시오.
 - * 외국 거래소의 가상자산예치금의 경우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된 금액을 기재
5. '심볼'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의 심볼명을 기재하십시오.
 - 심볼명이 고시되지 않은 가상자산의 경우, 해당 거래소에서 발행하는 심볼명을 적고 비교란에 해당 사유를 기재하십시오.
6. '종목코드'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의 종목코드를 기재하십시오.
 - 종목코드가 고시되지 않은 가상자산의 경우, 해당 거래소에서 발행하는 종목코드를 적고 비교란에 해당 사유를 기재하십시오. 기타 사유로 종목코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999999를 입력 후 비교란에 해당 사유를 기재하십시오.
7. '가격'란 작성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재산등록 기준일의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 그 밖의 가상자산 : 해당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재산등록 기준일의 최종 시세가액. 다만,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
8. '가액'란은 현 수량에 제7호의 산정가격을 곱하여 기재하십시오.
9.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에 대한 취득(상실)일자·취득(상실)경위·소득원(사용처)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취득(상실)일자: 거래계약일, 매입일 등
 - 취득(상실)경위: 목적(취득·매도 목적 등), 방법(매입·매도·상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매도·상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 소득원(사용처):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가상자산을 취득한 자금 출처, 매도한 경우 매도금 사용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기타 비상장주식 실거래명세서

1. 거래 기본정보

일련 번호	종목명	소유자	관계	매매계약일	매매수량	1주당 매매가액 (원)	제3자 거래여부	비고
							[]	
							[]	

2. 기업 정보

법인명		발행주식 총수	
법인등록번호		1주당 액면가(원)	

첨부서류 국세 신고자료 1부

작성 방법

1. 본 서식은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기타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주식발행법인별로 각각 작성하십시오.
2.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3. '종목명' 란: 해당 주식의 종목명(예: ○○증권, ××전자)을 기재하십시오.
4. '매매계약일' 란: 재산등록 기준일 이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이루어진 매매만 해당하며, 둘 이상의 매매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매매계약일을 기재하십시오.
5. '1주당 매매가액' 란: 매매로 인해 발생한 국세 신고 시의 1주당 매매가액(경정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정된 가액)을 기재하시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국세 신고자료를 첨부하십시오.
6. '제3자 거래여부' 란: 등록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상호 간이 아닌 제3자와 매매거래를 한 경우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7. '발행주식 총수' 란: 소유자와 관계없이 가장 최근의 매매를 기준으로 매매계약일 현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기재하십시오.

210mm×297mm[백상지(80g/㎡)]

기타 비상장주식 평가명세서

1. 평가대상 기업 일반정보			
법인명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사업개시일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표시)			
㉠ 현재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
㉡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4년 미만의 법인, 휴업·폐업 중인 법인			[]

2. 평가대상 기업 재무정보			
① 발행주식 총수		1주당 액면가(원)	
② 자산총액(원)			
③ 부채총액(원)			
④ 순자산가액(원)(②-③)			
	최근 사업연도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직전 사업연도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직전전 사업연도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⑤ 당기순이익(원)			
⑥ 발행주식 총수			
⑦ 1주당 당기순이익(원) (각 사업연도별 ⑤ ÷ ⑥)	⑧	⑨	⑩

3. 비상장주식 1주당 평가액			
⑪ 1주당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의 가중 평균액(원) (⑧ × 3/6 + ⑨ × 2/6 + ⑩ × 1/6)			
⑫ 1주당 당기순이익가치(원) (⑪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 17조에 따른 이자율)			
⑬ 1주당 순자산가치(원) (④ ÷ ①)			
⑭ 1주당 평가액(원) (⑫ × 3/5 + ⑬ × 2/5)		비고	

첨부서류 별지 제1호의4서식(공직자 재산신고용 기업정보 확인서) 1부

기재요령

1. 본 서식은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기타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제2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주식발행법인별로 각각 작성하십시오.
2. 발행주식 총수(①): 재산등록 기준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를 기재하십시오.
3. 자산총액(②): 재산등록 기준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상의 자산총액을 기재하십시오.
4. 부채총액(③): 재산등록 기준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상의 부채총액을 기재하십시오.
5. 당기순이익(⑤): 재산등록 기준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기재하십시오. 다만,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그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1개월 미만은 1개월로 계산한다)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합니다.
6. 발행주식 총수(⑥): 재산등록 기준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3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를 각각 기재하십시오.
7. 1주당 당기순이익(⑦): ⑤란의 금액을 ⑥란의 총수로 나눈 금액을 기재하십시오.
8. 1주당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의 가중평균액(⑪): (⑧×3/6)+(⑨×2/6)+(⑩×1/6)로 산출된 가액을 기재하십시오. 다만,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기재하십시오.
9. 1주당 당기순이익가치(⑫): ⑪란의 금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이자율(10%)로 나눈 금액을 기재하십시오.
10. 1주당 순자산가치(⑬): ④란의 금액을 ①란의 총수로 나눈 금액을 기재하십시오. 다만,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기재하십시오.
11. 1주당 평가액(⑭): (⑫×3/5)+(⑬×2/5)로 산출된 금액을 기재하십시오. 다만, 그 금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⑬)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⑬)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기재하시고, '비고'란에 "순자산가치 80"이라고 기재하십시오.
- ④~⑧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⑧란의 금액을 그대로 기재하시고, '비고'란에 "순자산가치 100"이라고 기재하십시오.

재산 변동 사항 신고서

등록의무자	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소속
	직위(직급 등)	재산등록기준일
	주소(주택)	거주형태
	주소(직장)	
	전화번호(주택)	(직장)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등록사항(해당 항목에 "√" 표시)

재산등록사항	그 밖의 사항
<input type="checkbox"/> 부동산 <input type="checkbox"/>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input type="checkbox"/> 현금·수표 <input type="checkbox"/> 예금 <input type="checkbox"/>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input type="checkbox"/> 증권 <input type="checkbox"/> 채권 <input type="checkbox"/> 채무 <input type="checkbox"/> 금·백금 <input type="checkbox"/> 보석류 <input type="checkbox"/> 골동품·예술품 <input type="checkbox"/> 회원권 <input type="checkbox"/> 지식재산권 <input type="checkbox"/>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input type="checkbox"/>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input type="checkbox"/> 가상자산 <input type="checkbox"/> 재산변동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친족 등록 여부 <input type="checkbox"/> 공개 <input type="checkbox"/> 비공개 <hr/> 신고 구분 <input type="checkbox"/> 정기변동 <input type="checkbox"/> 퇴직 <input type="checkbox"/> 의무면제 <input type="checkbox"/> 재등록 <input type="checkbox"/> 재공개

본인은 공직자로서 명예를 걸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서약하며,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재산상의 변동사항을 별지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등록의무자

(서명 또는 인)

법원행정처장 귀하

기재요령

1.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십시오.
2. 거주형태는 ‘자가, 전월세, 기숙사, 관사, 부모집, 친척집 등’ 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1. 친족사항(등록의무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일련 번호	성명	관계	주민 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고지 거부	등록 대상	등록 제외	직업	변동 사유	비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직계존속(부모) 중 사망 등 등록제외 대상인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 모

※ 배우자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혼 이혼 사별

※ 자녀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대상 자녀 없음

기재요령

- 출생·사망·결혼·이혼·입양 등으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신분상 변동이 있거나 부양관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기재하십시오.
- ‘고지거부’란 : 「공직자윤리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직계존속·직계비속의 경우에는 "√" 표시를 하십시오.
※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3년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등록제외’란 : 이미 신고한 친족 중 사망한 사람 또는 결혼한 딸,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 "√" 표시를 하십시오.
- ‘등록대상’란 : 등록제외가 아닌 배우자, 등록제외나 고지거부가 아닌 직계존속·직계비속은 "√" 표시를 하십시오.
- ‘직업’란에는 직장명·직위, 학교명·학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 ‘변동사유’란에는 친족사항의 변동사유를 기재하십시오.(예 : 출생, 사망, 이혼, 입양 등)
- ‘비고’란에는 친족별로 주소지에 대한 권리의 종류가 소유권이나 전세권이 아닌 경우 그 권리의 종류 또는 거주형태를 기재하십시오
(예 : 관사, 기숙사, 친척집 등).

2. 재산변동신고 총괄표

재산항목	관계	권리자	권리 종류	종전 가액	변동액		현재 가액	형성과정	변동 사유
					증가액 (실거래 가격)	감소액 (실거래 가격)			
▶ 토지(소유권·지상권·전세권)(소계)									
					()	()		·취득(상실)일자: ·취득(상실)경위: ·소득원(사용처): ·기타:	
					()	()			
▶ 건물(소유권·전세권)(소계)									
					()	()		·취득(상실)일자: ·취득(상실)경위: ·소득원(사용처): ·기타:	
					()	()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	()			
					()	()			
▶ 현금(수표 포함)(소계)									
▶ 예금(보험 포함)(소계)									
▶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소계)									
▶ 증권(주식·국채·공채·회사채·백지신탁·주식매수선택권 등)(소계)									
			기타 비상장주식 (법 제4조 제3 항제7호에 따 른 그 외의 주식)					·취득(상실)일자: ·취득(상실)경위: ·소득원(사용처): ·기타:	
			주식매수 선택권					·취득(상실)일자: ·취득(상실)경위: ·기타:	
▶ 채권(소계)									
			사인 간 채권					·취득(상실)일자: ·취득(상실)경위: ·소득원(사용처): ·기타:	
▶ 채무(소계)									
			사인 간 채무					·취득(상실)일자: ·취득(상실)경위: ·소득원: ·기타:	
▶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소계)									

					()	()			
					()	()			
▶ 보석류(소계)									
					()	()			
					()	()			
▶ 골동품 및 예술품(소계)									
					()	()			
					()	()			
▶ 회원권(소계)									
					()	()			
					()	()			
▶ 지식재산권									
▶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소계)									
									취득(상실)일자: 취득(상실)경위: 소득원(사용처): 기타: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가상자산(소계)									
									취득(상실)일자: 취득(상실)경위: 소득원(사용처): 기타: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 사항									
총계									증감액: (가액변동:)

기재요령

※ 뒤에 나오는 재산항목별 기재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1. 재산항목

○ 재산종류별로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되, 다음의 권리명세에 대한 변동사항을 기재하십시오.

① 토지 : 소재지·면적 등을 기재하십시오(임야·전·답·대지·잡종지 등).

② 건물 : 소재지·면적 등을 기재하십시오(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상가·빌딩·오피스텔·사무실 등).

※ 미입주 분양아파트인 경우에도 기재하십시오.

③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 '4.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의 작성방법 참조

④ 현금(수표 포함)

⑤ 예금(보험 포함) : 개인별·예탁기관별로 예탁기관명·계좌번호 등을 기재하십시오(파생상품증거금 포함).

⑥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 개인별·예탁기관별로 예탁기관명·계좌번호 등을 기재하십시오.

⑦ 증권 : 예탁기관·종목명·보유량 등을 기재하십시오[예 : ○○증권 ○○전자(보유량 100주)].

⑧ 사인 간 채권 : 채무자명과 연락처(주소·전화번호 등)를 기재하십시오.

⑨ 채무 : 금융기관 채무는 은행명·계좌번호를, 사인 간 채무는 채권자명과 연락처를, 건물임대 채무는 물건 주소를 기재하십시오.

- ⑩ 금·백금 : 종류·함량·중량 등을 기재하십시오.
- ⑪ 보석류 : 보석의 종류·크기·색상 등을 기재하십시오.
- ⑫ 골동품·예술품 : 종류·크기·작가 및 제작연대 등을 기재하십시오.
- ⑬ 회원권 : 발행인, 회원권 번호 등을 기재하십시오.
- ⑭ 지식재산권 : 명칭·등록번호·저작물의 종류 등 구체적 권리명세를 기재하십시오.
- ⑮ 합명·합자·유한회사의 출자지분 : 회사명, 출자가액, 지분비율,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이전 최근 사업연도의 그 회사 결산서상의 연간매출액의 증감사항 등을 기재하십시오.
- ⑯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법인명, 출연재산, 보유직위 등을 기재하십시오.
- ⑰ 가상자산 : 가상자산명 또는 가상자산예치금(가상자산 외에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 예치하고 있는 원화 등 법정화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재하십시오
 ※ 외국 거래소의 가상자산예치금의 경우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된 금액을 기재

2. 관계 및 권리자

- 본인과의 관계 및 친족의 성명을 기재하십시오.
-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직계존속·직계비속도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 사항'란에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한 후 '변동사유'란에 고지거부 사유 및 고지거부 허가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예 : 독립생계유지, 2007. 3. 3.).
- 이미 신고한 친족 중 사망한 사람 또는 결혼한 딸이 있는 경우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 사항'란에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한 후 '변동사유'란에 등록제외 사유, 등록제외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예 : 사망, 2007. 5. 3.).

3. 권리종류

- 부동산(토지·건물) : 소유권·지상권·전세(임차권)·사실상 소유권·분양권 등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 자동차·광업권·어업권·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
- 현금
- 예금(보험 포함) : 예금의 종류를 기재하십시오(예 : 보통예금, 정기에금, 정기적금, 보험, 공제, 수익증권 등).
-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 예금의 종류를 기재하십시오.
- 증권 : 상장주식·비상장주식·국채·공채·회사채·백지신탁·주식매수선택권 등
- 채권 : 사인 간 채권 등
- 채무 : 금융기관 채무, 사인 간 채무, 건물임대 채무 등
- 금·백금 : 금·백금의 종류 또는 제품명
- 보석류 : 보석의 종류(다이아몬드 등) 또는 제품명
- 골동품 및 예술품 : 도자기·서양화·동양화·서예·공예·수예·조각·칠기 등
- 회원권 : 골프회원권, 헬스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
- 지식재산권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 등
-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가상자산 : 가상자산·가상자산예치금 등

4. 종전가액 : 종전 신고시점의 재산가액을 기재하십시오.

5. 변동액 : 재산변동사항 신고서의 기재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 안에는 실거래가격을 기재하십시오.

6. 현재가액 : 종전가액에서 변동액을 반영한 금액을 기재하십시오.

7. 형성과정

- 재산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부동산(토지·건물), 증권 중 같은 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기타 비상장주식) 및 주식매수선택권, 사인 간 채권, 사인 간 채무,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가상자산에 대하여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8. 변동사유

- 매도·매입·상속·증여·유증·수용·가액변동 등 재산증감 변동원인을 기재하고, 재산의 증감일자·증감경위·소득원 등 소명할 필요가 있을 경우 내용을 '변동사유'란에 기재하거나 소명자료를 첨부하십시오.
- 예금 및 증권의 '변동사유'란에는 총변동액의 변동원인을 기재(개인별 변동사유 기재는 생략)하되 개인별·계좌번호별로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하십시오.

9. 총계

- 재산항목별 소계를 합산하여 기재하되, 증권 중 주식매수선택권, 지식재산권,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총계에 반영하지 마십시오.

3. 부동산

가. 토지(소유권·지상권·전세권)

일련 번호	권리자	관계	권리의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				가액 (천원)				실거래 가격 (천원)	형성과정	변동 사유
						종 전	증 가	감 소	현 재	종 전	증 가	감 소	현 재			
														·취득(상실)일자: ·취득(상실)경위: ·소득원(사용처): ·기타:		

기재요령

-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 ① 매매·상속·증여 등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② 지번분할·합병 등으로 면적에 변동이 있는 경우, ③ 부동산의 공시가격 변동으로 평가액이 증감된 경우에 신고하십시오.
- 대지 위에 건물이 있으며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 '가. 토지' 항목이 아닌 '나. 건물' 항목에 기재하십시오. 대지 위에 건물이 있으나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에는 대지 소유자의 경우 대지는 '가. 토지' 항목에 기재하시고, 건물 소유자의 경우 건물은 '나. 건물' 항목에 기재하십시오.
- ① 등기명의인이 아니면서 사실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상속 중인 재산 등) '변동사유'란에 "사실상 소유"라고 표시하고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 및 관계를 기재하며, ② 본인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타인 소유인 경우(문중재산 등)에도 등록하고 '변동사유'란에 사실관계를 기재하십시오.
- '권리의 종류'란 기재요령
 -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사실상 소유권 또는 분양권을 기재하고, 미등기 권리는 '변동사유'란에 "등기 미완료"라고 기재하십시오.
- '지목'란 기재요령
 -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지·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 등으로 기재하십시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 '가액'란의 가액산정방법 및 기재요령
 - 매매·상속·증여 등으로 부동산 소유권 등이 변동된 경우
 -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 실거래가격(실매입액)을 기재하되,
 - 증여·상속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면적(㎡)을 기재하십시오.
 - 분양권의 경우: '가액'란에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을 기재하고, '실거래가격'란은 분양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의 경우: "계약서상의 지료·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 금액"을 기재하십시오.
 - 매도·수용·증여 등으로 소유권 등이 이전된 경우: '가액'란에 종전가액을 감소하여 기재하고, '실거래가격'란에 실매도액 또는 보상액 등을 기재하십시오.
 - 소유권 변동 없이 부동산 공시가격 변동으로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 종전가액을 "공시가격"로 신고한 경우 : 공시가격을 확인하여 증감을 신고하십시오.
 - 종전가액을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보다 높을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면적(㎡)을 기재하고,
 -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보다 낮을 때에는 기존 실거래가격을 기재하십시오.
- '변동사유'란에는 매도·매입·상속·증여·유증·수용·가액변동 등 권리증감 변동사유를 기재하십시오.
- 공동소유 토지인 경우 '면적', '가액'란에는 소유지분을 등록하고, '변동사유'란에는 전체지분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유", "합유" 등 공동소유의 형태를 표시하십시오.
-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 있는 경우
 - 매도한 경우 : 매수자가 잔금은 완납하였더라도 본인이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면 그 재산을 등록하십시오.
 - 매입한 경우 : 종도금을 지급한 때부터 등록하며, '현재가액'란에 지급한 총금액을 적고, '변동사유'란에 계약관계와 총매입액을 기재하십시오.

※ 다만, 계약금만 주고받은 경우에는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 소명자료(법 제6조제8항)
 - 변동일자·변동경위·소득원 그 밖의 재산증감원인을 '변동사유'란에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 외국 소재 부동산은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적고 '변동사유'란에 외화종류(달러, 유로, 파운드 등)를 기재하십시오.
-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취득(상실)일자·취득(상실)경위·소득원(사용처)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취득(상실)일자 : 매입일, 매도일, 상속일, 증여일 등
 - 취득(상실)경위 : 목적(취득·매도 목적 등), 방법(매입·매도·상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매도·상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 소득원(사용처) :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토지를 취득한 자금 출처, 매도한 경우 매도금 사용처
 - 기타 :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3. 부동산

나. 건물(소유권·전세권·분양권 등)

일련 번호	권리자	관계	권리 의 종류	소재지	종류 및 용도	대지 면적 (㎡)	건물면적(㎡)				가액(천원)				실거래 가격 (천원)	형성과정	변동 사유
							중 전	증 가	감 소	현 재	중 전	증 가	감 소	현 재			

기재요령

-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 ① 매매·상속·증여 등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② 증축 등으로 면적이 변동된 경우, ③ 부동산의 공시가격 등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도 신고하십시오.
- ① 등기명의인이 아니면서 사실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상속 중인 재산 등) '변동사유'란에 "사실상 소유"라고 표시하고 등기 부상의 소유명의인 및 관계를 기재하며, ② 본인명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타인 소유인 경우(문중재산 등)에도 등록하고 '변동사유'란에 사실관계를 기재하십시오.
- '권리의 종류'란 기재요령
 -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사실상 소유권 또는 분양권으로 기재하고, 미등기 권리는 '변동사유'란에 "등기 미완료"라고 표시하십시오.
- 면적은 대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제곱미터(㎡)로 환산하여 해당란에 기재하십시오(1평은 3.3㎡로 계산).
- '종류 및 용도'란
 - 종류 : 일반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빌딩 등
 - 용도 : 주택·상가·사무실·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 등
- 가액산정방법 및 기재요령
 - 매매·상속·증여 등 부동산 소유권 등이 변동된 경우
 -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 실거래가격(실매입액)을 기재하십시오.
 - 다만, 증여·상속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공시한 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을 '가액'란에 기재하십시오.
 - 상가·빌딩·오피스텔, 그 밖의 부동산은 대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여 '가액'란에 기재하십시오.
 - 대지가액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표준공시지가의 적용)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면적(㎡)"으로 산정
 - 건물가액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공정가액(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 등) 중 최고가액"으로 산정
 - 분양권의 경우 : '가액'란에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을 기재하고, '실거래가액'란은 분양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의 경우 : "계약서상의 지료·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의 금액"을 기재하십시오.
 - 매도·수용·증여 등으로 소유권 등이 이전된 경우 : '가액'란에 종전가액을 감소하여 기재하고, '실거래가격'란에 실매도액 또는 보상액 등을 기재하십시오.
 - 소유권 변동 없이 부동산 공시가격 변동으로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 종전가액을 "공시가격"로 신고한 경우 : 공시가격을 확인하여 증감을 신고하십시오.
 - 종전가액을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보다 높을 때에는 공시가격을 적고,
 -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보다 낮을 때에는 기존 실거래가격을 기재하십시오.
- '변동사유'란에는 매도·매입·상속·증여·유증·수용·가액변동 등 권리증감 변동사유를 기재하십시오.
- 공동소유 건물인 경우 '면적', '가액'란에는 소유지분을 등록하고, '변동사유'란에는 전체지분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유", "합유" 등 공동소유의 형태를 표시하십시오
-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 있는 경우
 - 매도한 경우 : 매수자가 잔금은 완납하였더라도 본인이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면 그 재산을 등록하십시오.
 - 매입한 경우 : 중도금을 지급한 때부터 등록하며, '현재가액'란에 지급한 총금액을 적고, '변동사유'란에 계약관계와 총매입액을 기재하십시오.
 - ※ 다만, 계약금만 주고받은 경우에는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 무허가건물의 경우에는 허가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해야 하며, '가액'란에는 실매입액이나 사실상 거래가액을 기재하십시오.
- 주택·상가 등 소유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또는 임대보증금 등은 "10. 채무" 항목에 기재하십시오.
- 외국 소재 부동산은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기재하고 '변동사유'란에 외화종류(달러, 유로, 파운드 등)를 기재하십시오.
- 소명자료(법 제6조제8항)
 - 변동일자·변동경위·소득원, 그 밖의 재산증감 원인을 '변동사유'란에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취득(상실)일자·취득(상실)경위·소득원(사용처)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취득(상실)일자 : 매입일, 매도일, 상속일, 증여일 등
 - 취득(상실)경위 : 목적(취득·매도 목적 등), 방법(매입·매도·상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매도·상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 소득원(사용처) :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토지를 취득한 자금 출처, 매도한 경우 매도금 사용처
 - 기타 :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4.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일련 번호	권리자	관계	권리의 종류	권리의 명세	가액(천원)				실거래가격 (천원)	형성과정	변동 사유
					종전	증가	감소	현재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권리의 종류'란에는 광업권·어업권 및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권 또는 저당권 등으로 기재하십시오.
3. '권리의 명세'란 기재요령
 - ① 광업권·어업권 : 광물의 종류 또는 어업면허의 종류, 소재지, 존속기간 등을 기재하십시오.
 - ② 자동차 : 차명·제작연도·배기량·차량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십시오.
 - ③ 건설기계 : 기종 명·제작회사·제작연도·건설기계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십시오.
 - ④ 선박 : 종류·용도·선박 명·총톤수·건조연도·선박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십시오.
 - ⑤ 항공기 : 기종·형식·제작자·제작연도 등을 기재하십시오.
4. 가액산정방법 및 기재요령
 - ① 매매·상속·증여 등으로 소유권 등이 변동된 경우
 - 매입한 경우 : 실거래가격(실매입액)을 기재하십시오.
 - 매도한 경우 : 종전가액을 감소하여 기재하고 "실매도액"을 '실거래가격'란에 기재하십시오.
 - 증여·상속 등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 다음의 평가액(이하 "평가액"이라 한다)으로 등록하십시오. 이 때 가액은 번호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 광업권·어업권 : ① 「지방세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② 「광업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문가의 평가액
 - 자동차 : ① 자동차보험의 차량기준가액 ②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③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
 - 건설기계 : ①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
 - 선박 : ① 선박보험상 선박가액 ②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③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
 - 항공기 : ①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
 - ※ '변동사유'란에 가액산정방법 기재(예: 자동차보험의 차량기준가액, 시가표준액, 실거래가격)
 - ② 미거래로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 광업권·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 종전가액을 평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평가액을 확인하여 증감을 기재하십시오.
 - 종전가액을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평가액이 실거래가격보다 높을 때에는 평가액을 기재하고,
 -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평가액이 실거래가격보다 낮을 때에는 기존 실거래가격을 기재하십시오.
 -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 : 위의 해당하는 평가액을 기재하십시오.
 - 가액산정방법을 참고하여,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평가액을 확인하고 증감을 신고하십시오.
5. '변동사유'란에는 매도·매입·상속·증여·유증·존속기간 만료·가액변동 등 권리증감 변동사유를 기재하십시오.
6. 권리를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변동사유'란에 "공유", "합유" 등으로 표시하고, 지분을 기재하십시오.
7. 소명자료(법 제6조제8항)
 - 변동일자·변동경위·소득원, 그 밖의 재산증감 원인을 '변동사유'란에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8.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재산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5. 현금(수표 포함)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보유액(천원)				형성과정	변동사유
			종전	증가	감소	현재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현금과 수표는 합산하십시오.
3. 종전 신고금액이 증가(신규 포함)하거나 감소한 경우에 그 금액을 '증가'란이나 '감소'란 및 '현재'란에 기재하고, 전년도까지 신고된 현금총액은 '종전'란에 기재하십시오.
4. 종전 신고 시에는 소유자별 합계 1천만원 미만이어서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후 증가하여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1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증가'란 및 '현재'란에 그 총금액을 기재하십시오.
5.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현금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6. '변동사유'란에는 증감변동사유를 기재하고, 증감 원인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십시오.

6. 예금(보험 포함)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예탁기관	계좌번호		보유액 (천원)				형성과정	변동사유	
				개설일	만기일	종전	증가	감소	현재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종전 신고예금액이 증가(신규 포함)하거나 감소한 경우에 그 금액을 '증가보유액'란 또는 '감소보유액'란 및 '현재보유액'란에 기재하고, 전년도까지 신고된 예금총액은 '종전보유액'란에 기재하십시오.
* 만기 또는 계약해지의 경우 '증가보유액'란에는 이자 등 증가액을, '감소보유액'란에는 만기인출금액 또는 해지금액을 기재하고, 현재보유액이 "0"이 되도록 합니다.
3. '예금의 종류'란에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저축예금 및 양도성예금증서(CD), 저축성이 가미된 보험(100퍼센트 보장성보험만 제외)·수익증권(펀드 등)·금융투자업자에 예탁한 투자자에탁금(파생상품위탁증거금 포함) 등 그 명칭을 붙문하고 모두 등록하여야 하며, 각종 공제회, 상조회 불입금도 신고대상입니다.
※ 사모펀드의 경우 '예탁기관'란에 '자산운용사', '예금의 종류'란에 '펀드명', '변동사유'란에 '사모펀드유형'(예 : 전문투자형 또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을 기재하십시오.
4. 종전 신고 시에는 소유자별 예금총액(「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포함)이 1천만원 미만이어서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후 증가하여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예금총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모든 계좌의 증가 및 현재보유액을 기재하되,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은 별도의 항목에 등록하십시오.
5. '보유액'란에는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적립된 금액 또는 평균금액을 기재하고, '변동사유'란에는 "만기계약금액, 동창회비, 친목회비, 문중회비 등" 특이사항을 기재하십시오.
6. 파생상품위탁증거금의 경우에는 '변동사유'란에 파생상품거래의 대상물, 계약금액, 최종거래일 등 권리·의무사항을 간략히 기재하십시오.
7. 계좌별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는 기재하지 않고 "2. 재산변동신고 총괄표"의 예금 항목 '소계'란에 전체적인 증감액의 변동사유를 기재하십시오.
8. 외화예금은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기재하고 '변동사유'란에 외화종류(달러, 유로, 파운드 등)를 기재하십시오.
9.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예금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7.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예탁기관	계좌번호		보유액 (천원)				형성과정	특기사항
			예금의 종류	개설일	만기일	종전	증가	감소	현재		

기재요령

-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 종전 신고예금액이 증가(신규 포함)하거나 감소한 경우에 그 금액을 '증가보유액'란 또는 '감소보유액'란 및 '현재보유액'란에 기재하고, 전년도까지 신고된 예금총액은 '종전보유액'란에 기재하십시오.
* 만기 또는 계약해지의 경우 '증가보유액'란에는 이자 등 증가액을, '감소보유액'란에는 만기인출금액 또는 해지금액을 기재하고, 현재보유액이 "0"이 되도록 합니다.
- '예금의 종류'란에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보통예금, 정기에금, 정기적금, 저축예금 및 양도성예금증서(CD), 저축성이 가미된 보험(100퍼센트 보장성보험만 제외)·수익증권(펀드 등)·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한 투자자예탁금(파생상품위탁증거금 포함)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등록하십시오.
- '특기사항'란에는 해당 계좌가 수입용인지 지출용인지 기재하십시오.
- 계좌별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는 기재하지 않고 "2. 재산변동신고 총괄표"의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항목 '소계'란에 전체적인 증감액의 변동사유를 기재하십시오.
-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예금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8. 증권(주식·국채·공채·회사채·백지신탁·주식매수선택권 등)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증권의 종류	예탁 기관 (법인명)	발행인 (종목명)	행사 가격	수량				가액(천원)				형성과정	변동 사유
				계좌 번호 (법인등 등록번호)	종목 코드	행사 기간	종 전	증 가	감 소	현 재	종 전	증 가	감 소	현 재		
			기타 비상장주식 (법 제4조 제3항 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												·취득(상실)일자: ·취득(상실)경위: ·소득원(사용처) ·기타:	
			주식매수 선택권												·취득(상실)일자: ·취득(상실)경위: ·기타:	

기재요령

-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 소유자별로
 - 신규로 증권을 취득한 경우 ② 종전에 신고한 증권 계좌번호가 변경되거나 보유수량이 변동된 경우 ③ 종전에 신고한 주식의 종류 및 수량 변동 없이 주가의 변동만으로 가액만 변동된 경우에 등록하십시오.
※ 공개자는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주식변동사항 신고서를 제출하십시오.
- 종전 신고 시에는 합계 1천만원 미만이어서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후 증가하여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합계 1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모든 계좌의 수량 및 가액을 신고하십시오.
- '증권의 종류'란 기재요령
 - 상장주식·비상장주식·국채·공채·회사채·백지신탁·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중 해당되는 항목을 기재하십시오.
 - 금융투자상품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에 대한 투자금은 주식으로 등록하고, 같은 조 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펀드 등)은 "6. 예금" 항목에 등록하십시오.
- '예탁기관(법인명)' 및 '계좌번호(법인등록번호)'란: 증권이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만 법인명과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십시오.
- '발행인(종목명)'란: 증권이 채권인 경우 발행인(예: 기획재정부, 경상북도, ○○철강)을 기재하고, 주식(주식매수선택권 포함)인 경우 종목명(예: ○○증권, ××전자)을 기재하십시오.
- '종목코드'란: 증권이 주식인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 '행사가격'(1주당)과 '행사기간'란(예: 2007. 1. 1. ~ 2008. 12. 31.): 증권이 주식매수선택권인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 가액산정방법
 - 원칙적으로 증권이 가액산정은 액면가로 합니다.
 - 다만, 주식 중 한국거래소 상장주식은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최종가격(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이전에 거래가 마감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최종가격)으로 산정하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거래량가중평균가를 말하며,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전에 거래가 마감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기준가)로 산정하며, 최종가격 및 기준가의 기준일을 각각 '변동사유'란에 기재하십시오.
 -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4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기타 비상장주식)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가액을 산정하십시오.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을 제출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및 제3호 본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호의4서식(별지 제1호의4서식은 해당 법인의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로 대신할 수 있음)을 제출하십시오.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동사유'란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고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액면가로 신고하십시오.

⑤ 주식매수선택권은 지급받을 주식의 수량을 기재하되, 지급받을 주식의 상장주식인 경우에는 '가액'란에 현재시가를 적고,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가액'란에 행사가격을 기재하십시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가액은 총괄표상 총계에는 합산하지 마십시오.

※ 주식선택권의 일종인 스톡어워드(stock award)도 등록대상입니다.

10. 전년도까지 신고된 증권의 수량 및 가액은 '증전수량'란 및 '증전가액'란에 기재하십시오.
 11.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게 된 경우에는 매도처리하고, 증권의 종류(상장주식·비상장주식 등)를 달리하여 신규로 다시 등록하십시오.
 12. '현재가액'란은 현 수량에 제7호의 산정가격을 곱하여 기재하고, 증감액은 현재가액과 지난번에 신고한 종전가의 차액을 증가 또는 감소로 구분하여 기재하십시오.
 13. 재산변동신고 기간중에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변동신고 시에 '증권의 종류'란에는 백지신탁으로 기재하고 '변동사유'란에 신탁일자, 신탁회사를 기재하십시오.
 14. 건별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는 기재하지 않고 "2. 재산변동신고 총괄표"의 증권 항목 '소계'란에 전체적인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를 기재하십시오.
 15.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증권의 종류'가 기타 비상장주식(법 제4조제4 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에 한함) 및 주식매수선택권인 경우 해당 증권에 대한 취득(상실)일자·취득(상실)경위·소득원(사용처)(주식매수선택권은 제외)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취득(상실)일자 : 거래계약일, 주주명부 등재일, 매도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 및 행사일 등
 - 취득(상실)경위 : 목적(취득·매도 목적 등), 방법(매입·매도·상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매도·상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 소득원(사용처) :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증권을 취득한 자금 출처, 매도한 경우 매도금 사용처
 - 기타 :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

9. 채권

일련 번호	채권자	관 계	채권의 종류	채권액(천원)				발생일 만기일	채무자		형성과정	변동 사유
				종전	증가	감소	현재		채무자명	주소		
			사인 간 채권								·취득(상실)일자: ·취득(상실)경위: ·소득원(사용처): ·기타: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채권의 종류'란에는 사인 간 채권, 기타로 기재하십시오.
3. 신규 채권이 발생하거나 종전에 신고한 채권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 신고하고, 전년도까지 신고된 채권의 총액은 '종전채권액'란에 기재하십시오.
4. 종전 신고 시에는 소유자별 합계 1천만원 미만이어서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후 증가하여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1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현재 채권액'란에 기재하여 등록하십시오.
5. 주택이나 그 밖의 부동산에 설정한 전세권(임차권) 등은 "3. 부동산" 항목에 기재하고, "9. 채권" 항목에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6. 사인 간 채권인 경우에는 '주소'란에 채무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십시오.
7.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채권의 종류'가 사인 간 채권인 경우에는 취득(상실)일자·취득(상실)경위·소득원(사용처)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취득(상실)일자 : 계약이체일, 차용증상 대어일, 채권 환수일 등
 - 취득(상실)경위 : 채무자와의 관계, 발생사유 등
 - 소득원(사용처) :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등 해당 채권의 자금 출처, 채권을 환수한 경우 그 사용처
 - 기타 :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8. '변동사유'란에는 증감 변동사유를 기재하십시오.

10. 채무

일련 번호	채무자	관계	채무의 종류	채무액(천원)				계좌번호		채권자		형성과정	변동 사유
				종 전	증 가	감 소	현 재	발생일	만기일	채권자명	주소		
			사인 간 채무									·취득(상실)일자: ·취득(상실)경위: ·소득원: ·기타: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채무의 종류
 - 금융채무 :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 사인 간 채무
 - 건물(또는 토지) 임대 채무
3. 종전 신고 시에는 소유자별 1천만원 미만이어서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후 증가하여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1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증가채무액'란 및 '현재채무액'란에 기재하여 등록하십시오.
4. 현 보유채무액을 '현재채무액'란에 기재하십시오.
5. 금융채무인 경우에는 계좌번호를 해당란에 기재하고, '채권자명'란에 "금융기관명"을 기재하십시오.
6. 소유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임대보증금 등은 채무 항목에 기재하고, '변동사유'란에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등으로 표시하십시오.
7. 사인 간 채무인 경우에는 '주소'란에 채권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십시오.
8. '변동사유'란에는 채무의 용도를 기재하십시오.
9.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채무의 종류'가 사인 간 채무일 경우 취득(상실)일자·취득(상실)경위·소득원(채무를 상환한 경우에 한함)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취득(상실)일자 : 계좌이체일, 차용일, 채무 상환일 등
 - 취득(상실)경위 : 채권자와의 관계, 채무의 사용목적 등
 - 소득원 : 채무를 상환한 경우 상환금의 출처
 - 기타 :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11.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종류	함량	보유중량(g)				가액(천원)				실거래가격 (천원)	형성과정	변동 사유
					종전	증가	감소	현재	종전	증가	감소	현재			

기재 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소유자별로 합계 500만원 이상의 금·백금을 새로 보유하거나(종전에 500만원 미만이어서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후 증가된 경우 포함) 이미 등록된 금·백금이 감소되었을 경우에 등록하고, 전년도까지 등록된 보유량을 '종전보유중량'란에 기재하십시오.
3. '종류'란에는 금·백금의 종류 또는 금·백금의 제품명을 기재하되, 보석류에 붙어 있는 금·백금은 "12. 보석류" 항목에 기재하고, "11. 금 및 백금" 항목에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4. 같은 함량의 금 또는 백금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도 '증가보유중량'란이나 '감소보유중량'란 및 '현재보유중량'란에 기재하십시오.
5. 가액산정방법
 - ① 매매·상속·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 매입한 경우에는 실매입액을 기재하고, 매도한 경우에는 종전가액을 감소하여 기재하고 '실거래가격'란에 실매도액을 기재하십시오.
 - 증여·상속 등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시장가격[매도가액기준(/g)]을 확인하여 보유중량과 곱한 가액을 기재하십시오.
 - ② 미거래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시장가격을 확인하여 증감을 기재하십시오.
6. '변동사유'란에는 매입·매도·상속·증여·가액변동 등 증감원인을 기재하십시오.
7.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금·백금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12. 보석류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종류	크기	색상	가액(천원)				실거래가격 (천원)	형성과정	변동 사유
						종전	증가	감소	현재			

기재 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를 새로 보유하거나, 이미 등록된 보석류가 감소된 경우에 등록하되, 거래 없이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변동하지 않고 종전가액을 그대로 유지하십시오.
3. '종류'란에는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진주목걸이 등 보석의 종류 또는 보석제품의 종류를 기재하십시오.
4. 가액산정방법
 - ① 매입 시에는 실거래가격(실매입액 등)을 기재하고, 매도 시에는 종전가액을 감소하여 해당란에 기재하되 실매도액 등을 '실거래 가격'란에 기재하십시오.
 - ② 증여·상속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보석감정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을 등록합니다. 이 때 '변동사유'란에는 평가액을 산정한 전문가·전문가집단의 이름 또는 상호명과 그 연락처 등을 기재하십시오.
5. 실거래가격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때 기재하십시오.
6. '변동사유'란에는 매입·매도·상속·증여 등 증감원인을 기재하십시오.
7.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보석류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13. 골동품 및 예술품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종류	작품 명세				가액(천원)				실거래 가격 (천원)	형성과정	변동 사유
				품명	크기 (cm)	작가	제작 연대	종전	증가	감소	현재			

기재 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골동품 또는 예술품을 새로 보유하거나, 이미 등록된 골동품 또는 예술품이 변동된 경우에 신고하되, 거래 없이 계속 보유만 하고 있는 경우 변동하지 않고 종전가액을 그대로 유지하십시오.
3. '종류'란에는 도자기·회화(동양화·서양화·유화·수채화·판화 등)·서예·공예·조각·수예·칠기 등 골동품 및 예술품의 종류를 기재하십시오.
4. '품명'란에는 작품명과 작품의 특기사항을 기재하십시오.
5. '크기'란에는 가로×세로×높이를 센티미터(cm)로 기재하십시오.
6. 가액산정방법
 - ① 매입 시에는 실거래가격(실매입액 등)을 기재하고, 매도 시에는 종전가액을 감소하여 기재하되 실매도액 등을 '실거래가격'란에 기재하십시오.
 - ② 상속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화랑협회 등의 기관이나 전문감정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을 등록합니다. 이 때 '변동사유'란에는 평가액을 산정한 전문가·전문가집단의 이름 또는 상호명과 그 연락처 등을 기재하십시오.
7. '변동사유'란에는 매입·매도·상속·증여 등 증감원인을 기재하십시오.
8.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골동품·예술품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14. 회원권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종류	발행인	회원권번호	소재지	가액(천원)				실거래가 격 (천원)	형성과정	변동 사유
							종 전	증 가	감 소	현 재			

기재 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골프·헬스·콘도미니엄 등 회원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회원권당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회원권을 새로 보유하거나 이미 등록된 회원권이 변동된 경우에 등록하십시오.
3. 가액산정방법
 - ① 회원권은 매입 시에는 실거래가격(취득가액)을 해당란에 기재하십시오. 매도 시에는 종전가액을 감소하여 해당란에 기재하고, 실매도액을 '실거래가격'란에 기재하십시오.
 - ② 다만, 골프회원권의 경우
 - 매입·상속·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추가된 경우 '가액'란에 실거래가격(취득가액)을 기재하되, 다만, 증여·상속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를 기재하십시오.
 - 미거래 시에도 재산등록 기준일의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를 확인하여 가액을 변동하여 기재하십시오. 다만, 이전 재산등록 시 신고서에 실거래가격을 신고한 경우
 -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기준시가가 신고된 실거래가격보다 높을 때에는 기준시가를 신고하고,
 -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기준시가가 신고된 실거래가격보다 낮을 때에는 기존 실거래가격을 유지합니다.
4. '소재지'란에는 회원권이 있는 곳을 기재하십시오.
5. '변동사유'란에는 매입·매도·상속·증여·가액변동 등 증감원인을 기재하십시오.
6.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회원권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15. 지식재산권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종류	권리의 명세	소득금액 (천원)	형성과정	변동사유

기재 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소유자별로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을 새로 보유하거나 이미 등록된 지식재산권이 양도 등으로 변동된 경우 또는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 신고하십시오.
3. 종류에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 등을 기재하십시오.
4. '권리의 명세'란에는 발명(고안)의 명칭 및 등록번호, 저작물의 종류, 권리의 존속기간 등 지식재산권의 종류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십시오.
5. '소득금액'란에는 지식재산권으로 인하여 생긴 연간소득금액을 기재하고, 소득원인행위 등을 '변동사유'란에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6. '변동사유'란에는 신규등록·매도·존속기간만료 등 권리의 변동사유를 기재하십시오.
7.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취득일자·취득경위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16.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일련 번호	출자자	관계	회사명	대표자	자본금	변동사항				형성과정	변동 사유	
			소재지	영업종류	설립일	출자 금액		출자 지분				회사연간 매출액 (천원)
						종전	현재	종전	현재			

기재 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새로 출자하거나 이미 등록된 회사의 출자가액·출자지분이나 매출액이 변동된 경우에 신고하십시오.
3. 자본금이 증감한 경우에는 매도처리하고, 신규로 다시 등록하십시오.
4. '출자가액'란에는 변동된 출자금액의 증감사항을 기재하고, '출자지분'란에는 변동된 출자가액과 자본금에 대한 그 지분비율의 증감사항을 기재하십시오.
5. '회사연간매출액'란에는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이전 최근 사업연도의 그 회사 결산서상의 연간매출액을 기재하고, 종전 신고대비 증감액을 () 안에 함께 기재하십시오. 감소 기재 시 감소(△)표시를 하십시오.
6. '변동사유'란에는 출자가액 및 출자지분의 증감변동원인행위를 기재하십시오.
7. 출자일자·출자경위, 그 밖에 출자지분 증감원인행위를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변동사유'란에 기재하십시오.
8.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취득(상실)일자·취득(상실)경위·소득원(사용처)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취득(상실)일자 : 출자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재일, 출자지분 회수일 등
 - 취득(상실)경위 : 회사와의 관계, 출자·회수 목적 등
 - 소득원(사용처) :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출자지분의 자금 출처, 출자지분을 회수한 경우 그 사용처
 - 기타 :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17.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일련 번호	출연자	관계	출연재산 (천원)	보유직위	법인명칭	대표자	형성과정	변동사유
					소재지	목적사업		

기재 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비영리법인이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그 밖에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말합니다.
3. 새로 비영리법인에 출연하거나 이미 등록된 출연재산·보유직위·명칭·소재지·대표자·목적사업이 변동된 경우에 신고하십시오.
4. 출연재산은 변동된 출연재산의 명세를 기재하고, 종전 신고대비 증감액을 () 안에 함께 기재하십시오. '보유직위'란에는 등록의무자가 비영리법인에서 보유하는 직위와 담당 직무를 기재하십시오.
5. '변동사유'란에는 신규출연·출연금증가·보유직위변경 또는 비영리법인 목적사업변경 등 변동신고사유를 기재하십시오.
6.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출연재산의 출연일자·출연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18. 가상자산(가상자산에치금 포함)

일련 번호	소유자	관 계	거래 소명	가상 자산명	심볼 종목 코드	가격	수량				가액 (천원)				형성과정	변동사유
							종 전	증 가	감 소	현 재	종 전	증 가	감 소	현 재		
														·취득(상실)일자: ·취득(상실)경위: ·소득원(사용처): ·기타:		

기재 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소유자별로
 - ① 신규로 가상자산을 취득한 경우 ② 종전에 신고한 보유수량이 변동된 경우 ③ 종전에 신고한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 변동 없이 시가의 변동만으로 가액만 변동된 경우에 등록하십시오.
 - ※ 공개자는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의5서식에 따른 가상자산거래내역 신고서를 제출하십시오.
3. 소유자별로 금액에 관계없이 보유한 모든 가상자산의 수량 및 가액을 신고하십시오.
4. '거래소명'란 작성방법
 - 국내·외 거래소의 경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하목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등록된 정식 명칭을 기재하십시오.
 - 외국 거래소의 경우 외국 거래소의 정식 명칭을 기재하십시오.
 - 개인 간 교환·매매 등의 경우
 - 개인 간 교환·매매 등 거래소를 거치지 않은 경우 '기타'를 적고 형성과정에 상대방의 성명과 취득·상실일자, 거래금액, 교환 매물 등을 기재하십시오.
 - 기업 등의 에어드랍 등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된 경우 '기타'를 적고 형성과정에 배분주체(거래소·기업 등)의 명칭과 취득일자 등을 기재하십시오.
 - 이 외 거래소를 거치지 않은 매매·교환·이전 등의 경우 '기타'를 적고 형성과정에 보유 경위를 기재하십시오.
5. '가상자산명'란 작성방법
 - 국내·외 거래소 및 개인이 거래한 가상자산의 정식 명칭을 기재하십시오.
 - 가상자산에치금(가상자산 외에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 예치하고 있는 원화 등 법정화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가상자산 항목에 '가상자산에치금'으로 등록하십시오.
 - * 외국 거래소의 가상자산에치금의 경우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된 금액을 기재
6. '심볼'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의 심볼명을 기재하십시오.
 - 심볼명이 고시되지 않은 가상자산의 경우, 해당 거래소에서 발행하는 심볼명을 적고 변동사유란에 해당 사유를 기재하십시오.
 - 기타 사유로 심볼명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999999를 입력 후 변동사유란에 해당 사유를 기재하십시오.
7. '종목코드'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의 종목코드를 기재하십시오.
 - 종목코드가 고시되지 않은 가상자산의 경우, 해당 거래소에서 발행하는 종목코드를 적고 변동사유란에 해당 사유를 기재하십시오.
 - 기타 사유로 종목코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999999를 입력 후 변동사유란에 해당 사유를 기재하십시오.
8. '가격'란 작성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재산등록 기준일의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 그 밖의 가상자산 : 해당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재산등록 기준일의 최종 시세가액. 다만,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
9. 전년도까지 신고된 가상자산이 있는 경우 수량 및 가액은 '종전수량'란 및 '종전가액'란에 기재하십시오.
10. '현재가액'란은 현 수량에 제8호의 산정가격을 곱하여 적고, 증감액은 현재가액과 지난번에 신고한 종전가의 차액을 증가 또는 감소로 구분하여 기재하십시오.
11. 건별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는 적지 않고 "2.재산변동신고 총괄표"의 가상자산 항목 '소계'란에 전체적인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를 기재하십시오.
12.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에 대한 취득(상실)일자·취득(상실)경위·소득원(사용처)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취득(상실)일자: 거래계약일, 매입일 등
 - 취득(상실)경위: 목적(취득·매도 목적 등), 방법(매입·매도·상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매도·상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 소득원(사용처):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가상자산을 취득한 자금 출처, 매도한 경우 매도금 사용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재산 변동 요약서

소속	직급	생년월일	성명	등록기준일
----	----	------	----	-------

<재산증가·감소내역> (단위: 천원)

구분	재산 증가		재산 감소	
	금액	변동사유	금액	변동사유
01. 토지				
02. 건물				
03. 자동차 등				
04. 현금				
05. 예금				
06.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07. 유가증권				
08. 채권				
09. 채무				
10. 금				
11. 보석				
12. 골동품				
13. 회원권				
14. 지식재산권				
15. 출자지분				
16. 출연재산				
17. 가상자산				
합계	총 재산 증가		총 재산 감소	
	- 가액변동 증가		- 가액변동 감소	
	- ① 순재산 증가		- ② 순재산 감소	
(순재산) ③ 변동금액(①-②)	④ 재산증가·감소 사유			
천원				
⑤ 본인소득	⑥ 본인 외 소득		⑦ 총소득 (⑤+⑥)	

기재요령

1. 재산변동 요약서는 신고서의 재산항목별 현금흐름을 표 형식으로 보여주는 서식입니다.
2. 금액은 실거래가격을 원칙으로 기재하되, 실거래가격이 없을 때에는 재산등록 신고서의 현재가액을 기재하십시오(분양권의 경우도 현재가액을 기재).
 ※ 재산변동사항 신고서의 총괄표상 총계와 그 합이 다를 수 있음.
3. 채무감소인 경우에는 재산증가로, 채무증가인 경우 재산감소로 기재하십시오.
4. ③변동금액에 대해 ④란에 재산증가·감소사유를 요약하여 기재하십시오.
 ○ 총재산 증가(감소) - 가액변동 증가(감소) = 순재산 증가(감소)
 ※ 가액변동으로 인한 재산의 증감분은 실제증감분이 아니므로 이를 뺀 것임.
 예) 증가사유: 봉급저축, 주식매매(평가)이익, 축의금·조의금, 증여, 상속, 건물매도 차익 등
 예) 감소사유: 자녀교육비, 등록대상자의 고지거부, 자녀결혼, 주택수리비 등
5. 현금(수표 포함)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사유와 자금원천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6. 본인 소득(본인 외 소득): 종전 재산신고 이후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까지의 소득을 기재하십시오.
 ○ 원천징수영수증의 세전 급여를 기재하고 별도의 특별소득(임대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을 경우 급여와 합산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 동의서

(앞쪽)

1. 정보를 제공받을 기관명: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2. 정보제공 목적 : 「공직자윤리법」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직자 재산 등록·신고를 위한 금융거래잔액(가상자산거래 포함) 및 부동산 자료의 제공
3. 정보제공 범위
 - 재산 등록·신고 기준일 현재 명의인의 금융거래(가상자산거래 포함) 중 잔액에 관한 자료(신용정보 중 대출잔액에 관한 자료 포함)
 - 부동산 보유·등기 및 과세정보(지적, 건축, 주택에 관한 자료 포함)
 - 금융거래(가상자산거래 포함) 및 부동산 정보 제공기간 : 재산 등록·신고기간 중
4. 등록의무자(정보제공 요청자) 인적 사항

소속	직급	직위	성명

5. 동의자(등록의무자 포함) 인적사항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여부			동의확인 (서명 또는 인)
			금융	부동산	가상자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서명 또는 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서명 또는 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서명 또는 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서명 또는 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서명 또는 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서명 또는 인)

「공직자윤리법」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 등록·신고를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자의 금융거래(가상자산거래 포함) 내용과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동의자는 그에 따른 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 사실에 대한 명의인 통보를 받지 않는 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귀중

기재요령

- 본 동의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동의 철회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유효합니다.
-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정보를 제공받는 금융기관은 뒤쪽과 같습니다.
- 동의여부: 금융거래(가상자산거래 포함) 및 부동산 정보 중 제공을 원하는 부분의 "√" 표시를 하십시오.
- 동의 확인 : 자필서명 또는 인이 있어야 합니다.

정보 제공 금융기관명

-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은행법」에 따른 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등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 대행회사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 등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공제회·공단 등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 위 정보제공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해당 금융협회 등을 통하여 금융거래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 동의 철회서

1. 재산등록의무자 인적 사항

소속	성명
직위	직급

2. 정보제공 등의 철회자

관계	성명	철회사유	철회 정보			철회확인 (서명 또는 인)
			금융	부동산	가상자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서명 또는 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서명 또는 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서명 또는 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서명 또는 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서명 또는 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서명 또는 인)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거래(가상자산거래 포함) 또는 부동산정보 제공 동의를 위 사유로 철회하려고 합니다.

년 월 일

등록의무자

(서명 또는 인)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귀중

기재요령

- 금융거래(가상자산거래 포함) 또는 부동산 정보제공에 동의를 했던 사람 중 출가, 사망 등 신분상 변동 및 변심 등의 사유로 동의를 철회하려는 사람은 '관계'란에는 재산등록의무자와의 관계(부, 모, 배우자, 자녀 등)와 철회 사유(고지거부, 등록제외, 그 밖의 사유)를 적으십시오.

금융거래 정보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 확인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제 호

(앞쪽)

1. 동의자 현황

기관명	인원(명)		
	합계	등록의무자	배우자 및 직계존속·직계비속

2. 금융조회 대상자 명단: 붙임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5제1항,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4조제5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직자 재산 등록·신고를 위하여 금융조회 요청 및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에 대한 명의인 통보를 받지 않는 것에 동의한 명단을 확인합니다.

※ 동의서를 확인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열람·제출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직인

금융기관의 장 귀하

가상자산 거래잔고 자료 통보서

기관 구분 코드	거래소 명	일련 번호	주민 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성명	기준일	개설일	상품 유형 코드	가상 자산명	심볼	종목 코드	수량	가격	가액

기재요령

- 전산 입력 자료의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파일은 일정한 형식을 가진 레코드형태의 순차(SAM)파일로서 필드는 구분자로 구분하며, 레코드구분자는 마침(Enter)으로 구분합니다.
- 서식에서 정해진 길이보다 긴 문자(텍스트)는 해당 필드에서 정의한 길이만큼만 추출하여(잘라내어) 작성합니다.

필드명	형식	길이	누적 길이	필드별 작성방법						
기관구분코드	숫자	2	2	가상자산거래소(16) * 참고 : 은행(01),보협(02),증권회사(03),새마을금고(04),신용협동조합(05),상호저축(06).. 등						
구분자	문자	1	3	구분자 ' ' (Vertical Bar)						
거래소명	문자	30	33	가상자산거래소명						
구분자	문자	1	34	구분자 ' ' (Vertical Bar)						
일련번호	숫자	8	42	자료 제출요구서의 일련번호와 동일하게 작성						
구분자	문자	1	43	구분자 ' ' (Vertical Bar)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숫자	13	56	'-'를 제외한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구분자	문자	1	57	구분자 ' ' (Vertical Bar)						
성명	문자	10	67	명의인의 성명						
구분자	문자	1	68	구분자 ' ' (Vertical Bar)						
기준일	숫자	8	76	YYYYMMDD 형식(등록기준일 등 거래잔고를 확인하는 기준시점을 말함)						
구분자	문자	1	77	구분자 ' ' (Vertical Bar)						
개설일	문자	8	85	YYYYMMDD 형식(최초로 고객확인(실명인증)을 실시한 날을 말함)						
구분자	문자	1	86	구분자 ' ' (Vertical Bar)						
상품 유형코드	숫자	3	89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30%;">코드</th> <th>유형</th> </tr> </thead> <tbody> <tr> <td>600</td> <td>가상자산</td> </tr> <tr> <td>650</td> <td>가상자산예치금(법정화폐)</td> </tr> </tbody> </table>	코드	유형	600	가상자산	650	가상자산예치금(법정화폐)
코드	유형									
600	가상자산									
650	가상자산예치금(법정화폐)									
구분자	문자	1	90	구분자 ' ' (Vertical Bar)						
가상자산명	문자	100	190	가상자산명(예 : 비트코인) 또는 가상자산예치금(법정화폐)						
구분자	문자	1	191	구분자 ' ' (Vertical Bar)						
심볼	문자	28	219	상품의 심볼(예 : BTC)						
구분자	문자	1	220	구분자 ' ' (Vertical Bar)						
종목코드	문자	20	240	국세청에서 고시한 종목코드(예 : 000145)						
구분자	문자	1	241	구분자 ' ' (Vertical Bar)						
수량	숫자	30	271	가상자산 수량(가상자산예치금(법정화폐) 등 가상자산이 아니면 공백 처리)						
구분자	문자	1	272	구분자 ' ' (Vertical Bar)						
가격	문자	30	302	가상자산의 가격						
구분자	문자	1	303	구분자 ' ' (Vertical Bar)						
가액	문자	30	333	가상자산의 수량에 가격을 곱한 총 금액						
구분자	문자	1	334	구분자 ' ' (Vertical Bar)						

* 기준일의 가격 및 가액을 원단위로 작성합니다.(소수점 이하 포함)

주식변동사항 신고서

신고인	성명(한글)	(한자)		
	소속	연락처(휴대전화)		
	직위(직급 등)			
	주소			
변동내역	구분	종전	현재	
	주식종목수	상장 / 비상장	상장	/ 비상장
	보유총액	(천원)	(천원)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2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주식거래내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법원행정처장 귀하

유의사항

※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위탁계좌번호, 주식의 거래일, 종목, 수량, 실거래가격 등이 기재된 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위탁계좌원장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기재요령

○ 변동내역

- 주식종목수는 종전 재산신고 시 보유하고 있던 주식 종목 수와 재산등록일 기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 종목 수를 기재하십시오(상장, 비상장 구분 기재).
- 보유총액 :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총액을 합산하여 기재하십시오.

가상자산변동사항 신고서

신고인	성명(한글)		(한자)
	소속		연락처(휴대전화)
	직위(직급 등)		
	주소		
변동 내역	구분	종전	현재
	가상자산 종목수		
	가상자산 총액		
	가상자산 예치금	(천원)	(천원)
	보유총액	(천원)	(천원)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가상자산거래내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법원행정처장 귀하

첨부서류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하는 가상자산의 거래일, 종목, 수량, 실거래가격 등이 기재된 가상자산 거래내역서(그 명칭을 불문하고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것)
------	---

기재요령

○ 변동내역

- 가상자산 종목수는 종전 재산신고 시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 종목 수와 재산등록일 기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 종목수를 기재하십시오.
- 가상자산 총액은 종전 재산신고 시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 가액 총액과 재산등록일 기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 가액 총액을 기재하십시오.
- 가상자산예치금(가상자산 외에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 예치하고 있는 원화 등 법정화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종전 재산신고 시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예치금과 재산등록일 기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예치금을 기재하십시오.
* 외국 거래소의 가상자산예치금의 경우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된 금액을 기재
- 보유 총액은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 가액 총액과 가상자산예치금의 총액을 합산하여 기재하십시오.

210mm×297mm[백상지(80g/㎡)]

재산 등록 보완 신고서

등록의무자	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소속	
	직위(직급 등)	등록기준일	
	주소(주택)	거주형태	
	주소(직장)		
	전화번호(주택)	(직장)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등록 보완 사항 (해당 항목에 "√" 표시)

재산 보완 사항	그 밖의 보완 사항
<input type="checkbox"/> 부동산 <input type="checkbox"/>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input type="checkbox"/> 현금·수표 <input type="checkbox"/> 예금 <input type="checkbox"/>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input type="checkbox"/> 증권 <input type="checkbox"/> 채권 <input type="checkbox"/> 채무 <input type="checkbox"/> 금·백금 <input type="checkbox"/> 보석류 <input type="checkbox"/> 골동품·예술품 <input type="checkbox"/> 회원권 <input type="checkbox"/> 지식재산권 <input type="checkbox"/>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 지분 <input type="checkbox"/>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input type="checkbox"/> 가상자산 <input type="checkbox"/> 재산등록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친족 등록 여부 <input type="checkbox"/> 공개 <input type="checkbox"/> 비공개 <hr/> 보완신고 구분 <input type="checkbox"/> 최초 <input type="checkbox"/> 정기변동 <input type="checkbox"/> 퇴직 <input type="checkbox"/> 의무면제 <input type="checkbox"/> 재등록 <input type="checkbox"/> 재공개

본인은 공직자로서 명예를 걸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서약하며,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2항 또는 제8조의2제1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산상의 변동사항을 별지와 같이 보완하여 작성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등록의무자

(서명 또는 인)

법원행정처장 귀하

기재요령

1.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십시오.
2. 거주형태는 ‘자가, 전월세, 기숙사, 관사, 부모집, 친척집 등’ 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재산 등록(신고) 기간 연장 신청서

신청인 (재산등록 의무자)	성명	(한글)	소속	직위(직급 등)
		(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신고서	공개 구분	[] 공개자 / [] 비공개자		
	등록기준일			
	등록의무 기한	. . . 까지		
연장 신청 기간				
연장 신청 사유				

「공직자윤리법」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법원행정처장 귀하

유의사항

1. 등록대상 재산의 일부에 대하여 등록기간을 연장 받으려고 할 때에는 재산의 소유자 및 재산명을 기재하십시오.
2. 법령상 등록의무기한은 최초등록의무자는 등록기준일로부터 2개월이며, 퇴직공직자는 등록기준일로부터 1개월입니다.
(정기변동신고 대상자는 매년 2월말까지 등록의무기한입니다)
3. 공개자는 최대 20일, 비공개자는 최대 30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재산등록 현황 보고서(분기)

기관명	작성기준일
-----	-------

1. 재산등록의무자 및 등록현황

구분	의무자				등록자				미등록자				미등록 현황				
	전분기	이번 분기			전분기	이번 분기			전분기	이번 분기			계	법정신고기간미도래	법정신고기간초과	기간연장	신고유예
		계	공무원	유관		계	공무원	유관		계	공무원	유관					
합계	00 (00)	00 (00)															
대법관등																	
법원행정처장																	
법원장등																	
고등법원부장판사																	
지방법원부장판사																	
고등법원판사																	
판사																	
정무직																	
1급 및 상당																	
2급 및 상당																	
...																	

기재요령

1. 법정신고 기간은 등록기준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임
2. 재산공개 대상자는 ()안에 함께 기재함
3. 의무면제자, 퇴직자, 신고면제자 등은 제외함

2. 재산등록의무자 증감 내용

구분	계	증가 사항(+)				감소 사항(-)				
		신규등록자	재등록자	전입자	기타	의무면제자	퇴직자	전출자	신고면제자	기타
등록의무자	00 (00)									

기재요령

1. 전분기 대비 이번 분기 증감사항을 기재함
2. 재등록자는 전보·강임·강등 또는 퇴직 등에 의하여 3년(퇴직한 경우에는 1년) 이내 다시 등록의무자로 된 사람임(「공직자윤리법」 제5조제1항)
3. 전입자 및 전출자는 기존의 등록기관을 유지하면서 고용휴직, 파견으로 근무 중인 사람임
4. 의무면제자는 전보·강임·강등 또는 퇴직 등의 사유로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임(「공직자윤리법」 제5조제1항)
5. 신고면제자는 사망, 구금, 실종 등의 사유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신고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임(「공직자윤리법」 제6조 3제2항)
6. 기타는 공개대상자 신분에 변동이 있는 사람임
7. 재산공개대상자는 ()안에 함께 기재함
8. 재산등록의무자 변동내용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작성

< 재산 등록 의무자 변동 내용 >

연번	소속	직위 (직급 등)	성명	신분변동 사유	신분변동 발생일	등록 (이관일)	비고

기재요령

※ 신분변동 사유란에는 신규등록자, 재등록자, 등록서류이관자(전입, 전출), 의무면제자, 퇴직자, 사망자, 공개자의 신분변동 내역을 기재함

3. 재산변동사항 신고 유예자 현황

구분	계	유예 연수별			유예 사유별				비고
		1년	2년	3년	재외공관, 해외주재 사무소 근무	외국파견	휴직	기타	
총 유예자수									
전 분기 유예자수									
이번 분기 유예자 수	증가								
	감소								

※ 재산변동사항 신고유예자 내역을 다음 서식에 따라 작성

< 재산변동사항 신고 유예자 변동 내용 >

연번	구분	소속	직위 (직급 등)	성명	유예 사유	발생일	종료일	유예년도		비고
								년부터	년까지	

기재요령

1. '구분'란에는 유예자의 "증가" 또는 "감소"로 기재
2. 발생일 및 종료일 란에는 인사발령일을 기재
3. '유예년도'란에는 정기변동신고 및 의무면제자신고의 유예를 받는 연도를 기재
4. '비고'란에는 '정기변동' 또는 '의무면제'로 구분하여 기재

4. 정기변동사항 신고현황

구분 직급 등	의무자	신고자	미신고자 현황							비고
			계	기간 연장자	신고 유예자	신고 면제자	10월~12월 중 임용자	1~2월 중 퇴직자	기타	
	00									
계	(00)	<00>								

기재요령

1. 정기변동사항 신고는 전년도 재산상의 변동사항을 정기적으로 매년 2월 말까지 하는 신고로서 3월 중 재산등록현황 보고 시에만 작성함(「공직자윤리법」 제6조제1항)
2. 의무자는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기재하며, 의무자의 신고현황은 해당연도 3월 31일 기준으로 기재함
3. 10월~12월 중 임용자와 1~2월 중 퇴직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정기변동사항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임
4. 기타는 신고유예기간 종료 이후 신고기간이 미도래한 사람 등임
5. 미신고자 현황 명단을 별도로 붙임
6. 재산공개대상자는 () 안에, 임기제공무원은 < > 안에 함께 기재함

금융거래잔액 자료 제출요구서

일련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조회기준일	요청자소속	요청자성명	요청자전화번호

기재요령

전산 입력 자료의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다. 이 경우 모든 필드의 여백은 뒤에 두어 공란으로 처리하며, 각 필드의 데이터는 띄어 쓰지 않는다.

※ 파일은 일정한 형식을 가진 레코드형태의 순차(SAM)파일로서 필드구분자는 필드자릿수로 구분한다. 레코드 구분자는 마침(Enter)으로 구분한다.

필드명	형식	길이	누적길이	필드별 작성방법
일련번호	숫자	8	8	'00000001'부터 순차적으로 생성
구분자	문자	1	9	구분자 ' ' (Vertical Bar)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숫자	13	22	'-'를 제외한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구분자	문자	1	23	구분자 ' ' (Vertical Bar)
성명	문자	10	33	명의인의 성명
구분자	문자	1	34	구분자 ' ' (Vertical Bar)
기준일	숫자	8	42	YYYYMMDD 형식
구분자	문자	1	43	구분자 ' ' (Vertical Bar)
요청자 소속	문자	30	73	요청자의 소속기관명
구분자	문자	1	74	구분자 ' ' (Vertical Bar)
요청자 성명	문자	10	84	요청자의 성명
구분자	문자	1	85	구분자 ' ' (Vertical Bar)
요청자 전화번호	문자	15	100	요청자의 전화번호
구분자	문자	1	101	구분자 ' ' (Vertical Bar)

금융거래(입출금)내용 자료제출 요구서

일련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조회기간(시작일)	조회기간(종료일)

기재요령

전산 입력 자료의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다. 이 경우 모든 필드의 여백은 뒤에 두어 공란으로 처리하며, 각 필드의 데이터는 띄어 쓰지 않는다.

※ 파일은 일정한 형식을 가진 레코드형태의 순차(SAM)파일로서 필드구분자는 필드자릿수로 구분한다. 레코드 구분자는 마침(Enter)으로 구분한다.

필드명	필드길이	필드타입	필드 특성	필드예시
일련번호	6	문자형	·반드시 6자리	000001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13	문자형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이의 “-”는 제외	3801011234567
성명	30	문자형	·성명이 필드길이를 초과할 경우 성과 이름을 필드 길이만큼 작성	김하늘빛나리 →김하늘빛나
조회기간 (시작일)	8	문자형	·YYYYMMDD 형태	2005. 01. 01. → 20050101
조회기간 (종료일)	8	문자형	·YYYYMMDD 형태	2005. 12. 31. → 20051231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금융거래(입출금)내용 자료 통보서

일련 번호	거래 순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조회 기간 (시작일)	조회 기간 (종료일)	금융 기관명	계좌 번호	상품명	거래 구분	거래 내용	거래 일자	거래 금액 (수량)	계좌 잔액	거래 상대방	상대 계좌 번호	거래 점명

기재요령

전산 입력 자료의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다. 이 경우 모든 필드의 여백은 뒤에 두어 공란으로 처리하며, 각 필드의 데이터는 띄어 쓰지 않는다.

※ 파일은 일정한 형식을 가진 레코드형태의 순차(SAM)파일로서 필드구분자는 필드자릿수로 구분한다. 레코드 구분자는 마침(Enter)으로 구분한다.

필드명	필드 길이	필드 타입	필드특성	필드예시
일련번호	6	문자형	·조회 의뢰한 번호와 동일, 반드시 6자리여야 함	000001
거래순번	6	문자형	·회신자료 생성 시 동일 계좌에 대해 연번 부여, 반드시 6자리여야 함	000001, 000002, 000003, ..., 999999
성명	30	문자형	·성명이 필드길이를 초과하는 경우 성과 이름을 필드길이만큼 작성 ·필드길이 미만일 경우는 오른쪽을 공백으로 채움	김하늘빛나리 → 김하늘빛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13	문자형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이의 “-”는 생략	3801011234567
조회기간(시작일)	8	문자형	·YYYYMMDD 형태	2005. 01. 01. → 20050101
조회기간(종료일)	8	문자형	·YYYYMMDD 형태	2005. 01. 01. → 20050101
금융 기관명	16	문자형	·금융기관명이 필드길이를 초과하는 경우 필드길이만큼 작성	한국생명보험주식회사→ 한국생명
계좌번호	28	문자형	·고객이 소지하고 있는 통장이나 증서의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계좌번호 사이의 “-”는 생략 가능	016-21-0238-886 또는 016210238886으로 기재
상품명	50	문자형	·은행 등 : 예금의 종류 ·보험 : 보험상품명 ·증권 : 증권(채권)의 종류 또는 주식명 ·필드길이를 초과하는 경우 필드길이만큼 작성	보통예금
거래구분	10	문자형	·은행, 보험사 등 : 신규/입금/출금/해지 ·증권 : 신규/예수금입금/예수금출금/매수/매도/해지	입금
거래내용	50	문자형	·은행, 보험사 등은 각 거래에 대한 내용을 기재 ·증권사는 빈칸	ATM출금
거래일자	8	문자형	·YYYYMMDD 형태	2005. 01. 01. → 20050101
거래금액(수량)	15	문자형	·은행, 보험 등 : 거래금액(입금금액/출금금액) ·증권 : 예수금(입금/출금금액), 주식(매도/매수 수량)	작성예시 1 또는 2 참조
계좌잔액	15	문자형	·은행, 보험사 등 : 예금(상품)계좌의 총잔액 ·증권 : 예수금잔액/주식/보유수량(잔고)	작성예시 1 또는 2 참조
거래상대방	30	문자형	·은행인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정보 기재	홍길동
상대계좌번호	28	문자형	·거래상대방의 계좌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계좌번호 사이의 “-”는 생략 가능	016-21-0238-886 또는 016210238886으로 기재
거래점명	16	문자형	·해당 거래 지점명을 기재 ·필드길이를 초과할 경우 필드길이 만큼 작성	종로2가 지점

- ※ 회신자료 파일서식의 순서를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되며, 조회의뢰자 중 거래가 없는 사람은 작성에서 제외한다.
- ※ 거래금액, 계좌잔액 필드의 여백은 앞에 두고 나머지 필드의 여백은 뒤에 두며, 여백은 공란으로 처리하되 각 필드의 데이터는 띄어 쓰지 않는다.
- ※ 필드명 중 거래금액(수량), 계좌잔액 기재 시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란으로 처리해야 한다("0"이나 "-"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작성예시>

(1) 거래금액이나 계좌잔액이 5,240,800원인 경우 다음 형태로 저장(천원 단위까지 작성)

b	b	b	b	b	b	b	b	b	b	b	b	5	2	4	0
---	---	---	---	---	---	---	---	---	---	---	---	---	---	---	---

(b:공백)

(2) 주식의 거래(매수/매도)수량이 340주인 경우 다음 형태로 저장(주 단위로 작성)

b	b	b	b	b	b	b	b	b	b	b	b	b	b	3	4	0
---	---	---	---	---	---	---	---	---	---	---	---	---	---	---	---	---

(b:공백)

(3) 거래금액이나 계좌잔액 등 금액은 천원 단위(천원 미만은 버림)로 작성하나, 천원 미만(예 : 999원 등)인 경우 다음 형태로 저장한다.

b	b	b	b	b	b	b	b	b	b	b	b	b	b	b	0
---	---	---	---	---	---	---	---	---	---	---	---	---	---	---	---

(b:공백)

가상자산 거래내용 자료 통보서

일련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조회기간 (시작일)	조회기간 (종료일)	거래소명	계좌번호	가상자산명	심볼	종목코드	거래유형	거래일자	거래수량	거래가격	거래가액	수수료	거래상대방

기재요령

- 모든 필드의 여백은 뒤에 두어 빈칸으로 처리하며, 각 필드의 데이터는 띄어 쓰지 않습니다.
- 파일은 일정한 형식을 가진 레코드형태의 순차(SAM)파일로서 필드구분자는 필드자리수로 구분하며, 레코드구분자는 마침(Enter)으로 구분합니다.

필드명	필드길이	필드타입	필드특성	필드예시
일련번호	6	문자형	• 조회 의뢰한 번호와 동일, 반드시 6자리여야 함	000001
성명	30	문자형	• 성명이 필드길이를 초과하는 경우 성과 이름을 필드길이만큼 작성 • 필드길이 미만일 경우는 오른쪽을 공백으로 처리	김하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13	문자형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이의 "-"는 생략	3801011234567
조회기간(시작일)	8	문자형	• YYYYMMDD 형태	2005. 01. 01. → 20050101
조회기간(종료일)	8	문자형	• YYYYMMDD 형태	2005. 01. 01. → 20050101
거래소명	30	문자형	• 가상자산거래소명을 한글로 기재하되 거래소명이 필드길이를 초과하는 경우 필드길이만큼 작성	업비트
계좌번호	28	문자형	• 거래소와 연결되어 있는 계좌번호를 적고, 계좌번호 사이의 "-"는 생략 가능	016-21-0238-886 또는 016210238886으로 기재
가상자산명	100	문자형	• 가상자산명 또는 가상자산예치금(법정화폐)	비트코인
심볼	28	문자형	• 상품의 심볼	BTC
종목코드	20	문자형	• 국세청에서 고시한 종목코드	000145
거래유형	10	문자형	• 신규/매도/매수/입금/출금/해지 등	매수
거래일자	8	문자형	• YYYYMMDD 형태	2005. 01. 01. → 20050101
거래수량	30	문자형	• 거래한 가상자산의 수량(가상자산예치금(법정화폐)인 경우 생략)	0.01
거래가격	30	문자형	• 거래한 가상자산의 가격	10000.5678
거래가액	30	문자형	• 거래한 가상자산의 수량에 가격을 곱한 총 금액	100.005678
수수료	30	문자형	• 거래를 위해 지불한 수수료	10
거래상대방	30	문자형	• 개인지갑 또는 다른 거래소 등 거래상대방에 대한 정보 기재 • 필드길이 미만일 경우는 오른쪽을 공백으로 처리	홍길동

- ※ 최신자료 파일서식의 순서를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되며, 조회의뢰자 중 거래가 없는 사람은 작성에서 제외한다.
- ※ 거래가액 필드의 여백은 앞에 두고 나머지 필드의 여백은 뒤에 두며, 여백은 빈칸으로 처리하되 각 필드의 데이터는 띄어 쓰지 않는다.
- ※ 필드명 중 거래금액(수량) 기재 시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빈칸으로 처리해야 한다("0"이나 "-"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출석 요구서

재산등록의무자	성명(한글)	(한자)
	소속	직위(직급 등)
	주소	
출석대상자	성명	의무자와의 관계
	주소	
출석 이유		
출석 일시	년 월 일 시 분	
출석 장소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6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직인

유의사항

1. 사정에 의하여 지정된 일시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된 날의 전날까지 서면으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공직자윤리법 제26조에 따라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등록사항 심사결과 보고서

심사기관명		작성기준일				
구분	계	① 정기변동 신고자	② 신규 등록자	③ 재등록자	④ 의무 면제자	⑤ 퇴직자
⑥ 심사대상						
심사 결과	⑦ 이상없음					
	⑧ 실무종결					
	⑨ 보완명령					
	⑩ 경고 및 시정조치					
	⑪ 해임·징계의결요구					
	⑫ 과태료 부과					
	⑬ 해임·징계의결요구(법 제22조)					
심사 내용	⑭ 소명서 요청					
	⑮ 출장조사					
	⑯ 개별자료 요청					
	⑰ 출석요구					
	⑱ 조사의뢰					
	⑲ 금융조회					

작성 요령

○ 작성대상은 비공개자중 그 기관에 심사가 위임된 사람만 해당함.

- ⑦ 이상없음 : 재산심사결과 이상이 없는 사람의 수
- ⑧ 실무종결 : 재산심사결과 실무종결 처리한 사람의 수
- ⑨ 보완명령 :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누락하거나 가액 합산 등에 오기가 있다고 인정하여 보완을 명한 사람의 수
- ⑩ 경고 및 시정조치 : 법 제8조의2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경고 및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람의 수
- ⑪ 해임·징계의결요구 : 법 제8조의2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 조치를 요구한 사람의 수
- ⑫ 과태료 부과 : 법 제8조의2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조치를 요구한 사람의 수
- ⑬ 해임·징계의결요구(법 제22조) : 법 제8조의2 및 제22조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조치를 요구한 사람의 수
- ⑭ 소명서요청 : 구두(전화) 또는 심사기관장 명의의 서면으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람의 수를 적으며 단순한 확인 또는 증빙서 제출은 제외
- ⑮ 출장조사 : 물건소재지나 그 밖의 등록재산 관계 및 소명서 진술내용의 진위 등 사실 확인을 위한 현지출장 조사대상이 된 사람의 수
- ⑯ 개별자료 요청 :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각급 기관(금융기관 제외)에 심사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람의 수(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국세청 등에 일괄하여 부동산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는 제외)
- ⑰ 출석요구 : 등록의무자나 그 밖의 재산등록관계인의 출석진술을 요구한 사람의 수를 적으며 단순히 자료 제출을 위한 출석은 제외
- ⑱ 조사의뢰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조사 의뢰 승인요청을 한 사람의 수
- ⑲ 금융조회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금융조회 승인요청을 한 사람의 수

※ ⑨~⑬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양식에 따라 그 명단을 제출해야 함.

1. 보완명령 대상자

소 속	직 위(직급 등)	성 명	보완요구내용	비 고
	()			

※ "보완요구내용"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보완명령을 한 부실등록 내용 및 보완요구내용을 기재

2. 법적조치요구 대상자(⑩~⑬에 해당하는 사람)

소 속	직 위(직급 등)	성 명	위반내용	조치요구내용	비 고
	()				

※ 조치요구내용 : 법 제8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치 중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요구한 내용을 기재

재산형성과정 소명서

(앞면)

재산등록 의무자	성명(한글)	(한자)
	소속	전화번호(휴대폰)
	직위(직급 등)	전자우편주소
	주소	

연번	재산 종류	재산 내용	증빙 자료	비고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13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명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재산등록의무자

(서명 또는 인)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을 하지 않거나 최근 5년간 증빙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또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요구에 대해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제30조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명 내용

기재요령

.※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소명하고 관련 증빙자료(최근 5년간)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토지·건물) : 취득(매도)일자, 취득(매도)금액, 취득(매도)경위, 취득당시 주소(거소), 자금원(사용처) 등
- 자동차 등 : 취득(매도)시기, 취득(매도)금액, 자금원(자금사용처) 등
- 현금 : 취득시기, 자금원(자금사용처), 보유사유 등
- 예금 : 주요자금원(주요사용처) 등
- 증권 : 취득경위, 자금원(사용처) 등
- 사인 간 채권 : 자금원(회수 시 자금사용처), 채무자와의 관계 등
- 채무 : 자금사용처(채무이행 시 자금원), 채권자와의 관계 등
- 금·백금, 보석류, 골동품·예술품, 회원권 : 취득(매도)시기, 취득(매도)금액, 경위, 자금원(사용처) 등
- 출자지분, 출연재산 : 시기, 경위, 자금원 등
- 가상자산 : 취득경위, 자금원(사용처) 등

증빙자료 대체소명서

재산등록 의무자	성명(한글)	(한자)
	소속	전화번호(휴대폰)
	직위(직급 등)	전자우편주소
	주소	

대체 소명 내용

재산의 종류	
재산 내용 (소재지, 가액 등 권리명세)	
대체 사유	
소명 내용	※ 반드시 거래상대방을 기재(성명, 연락처 등)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증빙자료 대체소명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재산등록의무자

(서명 또는 인)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을 하지 않거나 최근 5년간 증빙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요구에 대해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라 징계요구를 요구하거나, 제30조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

소속		직위	성명
(단위: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가액 (실거래가격)
			비고
▶ 토지(소계)			()
▶ 건물(소계)			()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
▶ 현금(소계)			
▶ 예금(보험 포함)(소계)			
▶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소계)			
▶ 증권(소계)			
▶ 채권(소계)			
▶ 채무(소계)			
▶ 금 및 백금(소계)			()
▶ 보석류(소계)			()
▶ 골동품 및 예술품(소계)			()
▶ 회원권(소계)			()
▶ 지식재산권			
▶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소계)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가상자산(가상자산예치금 포함)(소계)			
▶ 고지거부 사항			
총계			

위의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등록의무자

(서명 또는 인)

기재요령

1. 소속·직위 및 본인과의 관계

- 등록의무자의 친족의 성명은 기재하지 않고, 본인과의 관계만 기재하십시오.
 -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속·직계비속도 '고지거부 사항'란에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한 후 고지거부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2. 재산의 종류

- 재산의 종류별로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 토 지
 - 임야·전·답·대지·잡종지 등을 기재하십시오.
- 건 물
 - 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상가·빌딩·오피스텔·사무실 등을 기재하십시오.
 - 아파트, 오피스텔의 경우는 건물면적만 기재하고 대지면적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 ※ 미입주 분양아파트인 경우에도 기재하십시오.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 광업권·어업권·자동차·항공기·선박·건설기계 등을 기재하십시오.
- 동 산
 - 현금·수표·예금(파생상품증거금 포함)·「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또는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채권·채무·금·백금·보석류
 - 증권 : 주식·국채·공채·회사채·백지신탁·주식매수선택권 등을 기재하십시오.
 - 골동품·예술품 : 도자기·서양화·동양화·서예·공예·수예·조각·칠기 등을 기재하십시오.
 - 회원권 : 골프회원권, 헬스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을 기재하십시오.
 - 지식재산권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 등을 기재하십시오.
 - 합명·합자·유한회사의 출자지분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가상자산

3.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

※ "최초재산등록 신고서"의 기재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 건물 : 주택에 대하여는 단독주택의 경우 지번,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명·동·호수 생략
예) A시 B동 C아파트 1동 100호 → A시 B동 아파트/A시 B동 123번지 → A시 B동
- 예금 : 개인별·예탁기관별로 예금의 합계액을 기재하십시오.
- 증권 : 개인별·종목별로 수량을 기재하고 합계액을 '가액'란에 기재하십시오.
- 합명·합자·유한회사의 출자지분
 - 회사명·출자금액·지분비율 및 재산등록 기준일 이전 최근 사업연도의 회사 결산서상의 연간매출액을 기재하십시오.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법인명·출연재산·보유직위를 기재하십시오.
- 가상자산
 - 가상자산·가상자산예치금(가상자산 외에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 예치하고 있는 원화 등 법정화폐를 말한다. 이하 같다)등을 기재하십시오.
 - ※외국 거래소의 가상자산예치금의 경우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된 금액을 기재

4. 가액

- () 안에는 실거래가격(실매입액)을 기재하십시오.
- 증권 중 주식매수선택, 지식재산권,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총계에 반영하지 마십시오.

5. 그 밖의 사항

- 재산의 취득일자·소득원 등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비고'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기재하지 마십시오(친족 성명, 연락처, 계좌번호 등).
-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은 관보에 게재됩니다.
- 최초재산등록 신고서와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은 각각 별도로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의 재산내용은 최초재산등록 신고서의 재산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

소속		직위		성명		(단위: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 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토지(소계)				()	()		
▶ 건물(소계)				()	()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	()		
▶ 현금(소계)							
▶ 예금(보험포함)(소계)							
▶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소계)							
▶ 증권(소계)							
▶ 채권(소계)							
▶ 채무(소계)							
▶ 금 및 백금(소계)				()	()		
▶ 보석류(소계)				()	()		
▶ 골동품 및 예술품(소계)				()	()		
▶ 회원권(소계)				()	()		
▶ 지식재산권							
▶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소계)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가상자산(가상자산예치금 포함)(소계)							
▶ 고지거부 사항 및 등록제외 사항							
총계							중감액: (가액변동)

위의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등록의무자

(서명 또는 인)

기재요령

1. 소속·직위 및 본인과의 관계

- 등록의무자의 친족의 성명은 기재하지 않고, 본인과의 관계만 기재하십시오.
 -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속·직계비속도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 사항'란에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한 후 고지거부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 이미 신고한 친족 중 사망하거나 결혼한 딸의 경우는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 사항'란에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한 후 등록제외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2. 재산의 종류

- 재산의 종류별로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 토지
 - 임야·전·답·대지·잡종지 등을 기재하십시오.
- 건물
 - 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상가·빌딩·오피스텔·사무실 등을 기재하십시오.
 - 아파트, 오피스텔의 경우는 건물면적만 기재하고 대지면적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 ※ 미입주 분양아파트인 경우에도 기재하십시오.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 광업권·어업권·자동차·항공기·선박·건설기계 등을 기재하십시오.
- 동산
 - 현금·수표·예금(파생상품증거금 포함)·「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또는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채권·채무·금·백금·보석류
 - 증권: 주식·국채·공채·회사채·백지신탁·주식매수선택권 등을 기재하십시오.
 - 골동품·예술품: 도자기·서양화·동양화·서예·공예·수예·조각·칠기 등을 기재하십시오.
 - 회원권: 골프회원권, 헬스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을 기재하십시오.
 - 지식재산권: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 등을 기재하십시오.
 - 합명·합자·유한회사의 출자지분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가상자산

3. 소재지·면적 등 권리의 명세

※ "재산변동사항 신고서"의 기재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 합명·합자·유한회사의 출자 지분
 - 회사명, 출자금액 및 지분비율의 변동사항,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이전 최근 사업연도의 회사 결산서상의 연간대출액의 증감 사항을 기재하십시오.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법인명·출연재산·보유직위 등의 변동사항을 기재하십시오.
- 가상자산
 - 가상자산·가상자산예치금(가상자산 외에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 예치하고 있는 원화 등 법정화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기재하십시오.
 - ※외국 거래소의 가상자산예치금의 경우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된 금액을 기재

4. 종전가액 : 종전신고시점의 재산가액을 기재하십시오.

5. 변동액 : "재산변동사항 신고서"의 기재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 안에는 실거래가격을 기재하십시오.

6. 현재가액 : 종전가액에서 변동액을 반영한 금액을 기재하십시오.

7. 총계

-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전년대비 증감액을 기재하고 괄호 안에는 가액변동으로 인한 증감액을 기재하십시오.
- 증권 중 주식매수선택권, 지식재산권,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변동분은 총계에 반영하지 마십시오.

8. 변동사유

- 매도·매입·상속·증여·유증·수용·가액변동 등 재산증감 변동원인을 기재하고, 재산의 증감일자·증감경위·소득원 등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변동사유'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에서 동산으로, 또는 그 반대로 재산증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사항별로 그 관계도 기재하십시오.
- 예금 및 증권, 가상자산의 '변동사유'란에는 총변동액의 변동원인을 기재(개인별 변동사유기재는 생략)하되, 개인별, 계좌번호별로 특이사항이 있으면 기재하십시오.

9. 그 밖의 사항

-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기재하지 마십시오(친족성명, 연락처, 계좌번호, 아파트 이름·동·호수 등).
-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은 관보에 게재됩니다.
- 재산변동사항 신고서와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은 각각 별도로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의 재산내용은 재산변동사항 신고서의 재산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위임장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본인이 (열람·복사)를 신청한 재산등록서류 사본의 수령권을 다음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다 음

위임받은 사람
소 속(주소)
직 위(직급 등)
생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위임받은 사람
소 속(주소)
직 위(직급 등)
성 명

()

(서명 또는 인)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법원행정처장 귀하

서약서

본인은 재산등록서류 사본 ()부를 인수하여 전달할 때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1. 등록사항 열람·복사 신청자에게 직접 지체 없이 전달(우편송달 금지)하겠습니다.
- 1. 전달 도중 개봉하지 않겠습니다.
- 1. 열람·복사 신청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실이나 그 밖의 사고에 대하여 책임지겠습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소 속(주소)
직 위(직급 등)
생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법원행정처장 귀하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 · 재심사()] 신청서

재산등록 의무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등)	전화번호(휴대폰)

본인과의 관계	성명	고지거부 사유	서명 또는 인	최종허가일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중 위와 같은 사유로 고지거부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 「공직자윤리법」 제12조제4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0조에 따라 고지거부[허가() · 재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재산등록의무자

(서명 또는 인)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소득금액 증명서, 재직증명서,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증빙자료
------	--

유의사항

1. 고지거부가 허가된 자가 계속하여 고지거부의 효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3년마다 그 3년째 정기재산변동신고기간에 고지거부 허가에 대한 재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신청서에는 고지거부 대상자인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서명 또는 인이 있어야 합니다.
- ※ 최종허가일은 재심사신청일 때에만 기재하십시오.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취소 신청서

재산등록 의무자	성명	소속
	생년월일	직위(직급 등)

본인과의 관계	성명	허가취소 신청사유	서명 또는 인

「공직자윤리법」 제12조제4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0조제8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재산등록의무자

(서명 또는 인)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귀중

유의사항

1. 이 신청서는 고지거부 허가를 받아 다음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기간까지 고지거부의 효력이 있는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하여 그 효력을 소멸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합니다.
2. 등록의무자가 직계존비속의 재산상황 파악 등을 위해 당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신청서를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3. 신청서에는 현재 고지거부의 효력이 있는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서명 또는 인이 있어야 합니다.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철회서

재산등록 의무자	성명	소속
	생년월일	직위(직급 등)

본인과의 관계	성명	허가신청 철회사유	서명 또는 인

「공직자윤리법」 제12조제4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0조제8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신청을 철회합니다.

년 월 일

재산등록의무자

(서명 또는 인)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귀중

유의사항

1. 이 신청서는 고지거부 허가신청 후 허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을 때에 고지거부 허가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작성합니다.
2. 등록의무자가 직계존비속의 재산상황 파악 등을 위해 당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신청서를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3. 신청서에는 고지거부 허가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서명 또는 인이 있어야 합니다.

주식 처분시한 연장 신청서

수탁 기관	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팩스번호) ()
	주소		
연장신청기간	일 (1회 30일 이내 연장 가능)		
수탁내용 및 연장신청사유	※ 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첨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수탁주식의 처분시한을 연장을 신청하오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탁기관의 장)

(인)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

주식 [[] 매각 [] 백지신탁] 신고서

[]의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함

신고인 (재산등록 의무자)	성명	(한글)	소속	직위 (직급 등)	()
		(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
주소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보유주식의
같이 신고합니다.

[[]매각
[]백지신탁] 사실을 위와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법원행정처장 귀하

기재요령

- 매각 또는 백지신탁의 일자 및 금액 등 세부사항은 별지에 기재하고, 증빙 자료(매각의 경우는 주식거래내역서, 백지신탁의 경우는 신탁계약서 등)를 첨부하십시오.

1. 매각(백지신탁) 내역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예탁 기관	계좌 번호	발행인 (주식명)	종목 코드	수량	매각 또는 신탁 금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2. 매각 후 잔여주식 내역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예탁 기관	계좌 번호	발행인 (주식명)	종목 코드	수량	가액 (천원)	비 고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결혼한 딸 제외)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발행인(주식명)' 란에는 상장주식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종목명(예: ○○증권, ××전자)을 적고, 그 외 비상장주식은 주식발행회사명을 기재하십시오.
3. 매각 또는 신탁금액은 보유주식별로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금액, 백지신탁한 경우에는 신탁계약금액을 기재하십시오.
4. 매각 또는 신탁 일자란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날짜, 매각 또는 신탁 회사는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명을 기재하십시오.
5. 매각 후 잔여주식 내역의 가액은 신고일 기준으로 확인된 가액을 적으십시오. 가액의 산정은 상장주식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심사청구기준일의 최종거래가격으로, 그 외 비상장주식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산정하십시오.

주식 [] 매각 [] 백지신탁 공개 목록

소속	직위(직급 등)			성명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보유주식 수				
본인 성명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위의 기재사항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법원행정처장 귀하

기재요령

1. 본인과의 관계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결혼한 딸 제외) 순으로 기재하되, 본인 외 친족의 성명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2. ‘발행인(주식명)’란에는 상장주식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종목명(예: ○○증권, XX전자)을 적고, 그 외 비상장주식은 주식발행회사명을 적으십시오.
3. 주식 수는 매각 또는 신탁한 주식 수량을 기재하십시오.
4. 주식 내역은 보유주식별로 발행회사명과 보유주식 수를 기재하십시오.
5. 매각 또는 신탁 여부는 매각 또는 백지신탁 중 처분한 방법을 기재하십시오.
6. 매각 또는 신탁 금액은 매각금액 또는 백지신탁계약금액을 기재하십시오.
7. 매각 또는 신탁 일자에는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기재하십시오.
8. 매각 또는 신탁 회사는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명을 기재하십시오.

2. 직무관련성 여부

순번	소유자	내용
1	관련사항	보유주식 발행 기관과 관련되는 업종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등 관련 여부
	관련여부	
2	관련사항	보유주식 발행 기업에 대한 각종 수사·조사·감사·검사 관련 여부
	관련여부	
3	관련사항	보유주식 발행 기업에 대한 인가·허가·면허·특허 관련 여부
	관련여부	
4	관련사항	보유주식 발행 기업에 대한 조세의 조사·부과·징수 관련 업무
	관련여부	
5	관련사항	보유주식 발행 기업에 대한 법령상 지도·감독 관련 여부
	관련여부	
6	관련사항	보유주식 발행 기업에 대한 예산의 편성·심의·집행 또는 공사 및 물품의 계약 관련 여부
	관련여부	
7	관련사항	보유주식 발생 기업에 대한 법률상 사건의 심리 또는 심판 관련 여부
	관련여부	
8	기타	

기재요령

○ 위의 관련사항이 공무원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여부'란에 "해당 없음"으로 적고,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3. 제출자료

구분	제출자료 내용
1. 담당직무 내용 관련 자료	(1)
	(2)
	(3)
	(4)
	(5)
2. 보유주식 관련 자료	(1)
	(2)
	(3)
	(4)
	(5)
3. 심사청구사유 관련 자료	(1)
	(2)
	(3)
	(4)
	(5)

기재요령

1. 담당직무내용 관련 자료 : '제출자료 내용'란에 해당 기관의 직제 규정, 사무분장, 위임전결 규정 등 신청인의 담당직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목 또는 자료명을 적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십시오.
2. 보유주식 관련 자료 : 주식발행기업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상장주식은 잔고증명서, 그 외 비상장주식은 기업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재무제표 등)의 제목을 적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십시오.
3. 심사청구사유 관련 자료 : 보유주식 발행기업과 신청인의 직무관련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그 제목 또는 자료명을 적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십시오(관련 자료에는 보유주식 발행기업과 관련된 각종 수사·조사·감사·검사, 인가·허가·면허·특허, 조세의 조사·부과·징수, 공사 및 물품의 계약 등과 관련이 없을 경우 소속기관의 확인서 등도 포함됨).

■ [별지 제34호의1서식] <개정 2023.>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서(백지신탁 관리·운영 중인 주식)

신청인 (재산등록 의무자)	성명	(한글)	소속	직위 (직급 등)	()
		(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
	주소				
직무 내용	(기준)				
	※ 백지신탁 계약체결 당시의 법령·직제·사무분장 등에 따른 담당 직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현재)				
심사청구 사유	※ 직위가 변경 후의 법령·직제·사무분장 등에 따른 담당 직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라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귀하

첨부서류	직위 변경전 담당직무와 변경 후의 담당직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직제규정, 사무분장 등)와 백지신탁계약서 등을 첨부하십시오.
------	--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철회요청서

신청인 (재산등록 의무자)	성명	(한글)	소속	직위 (직급 등) ()
		(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
	주소			
심사청구 내용	※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일자, 주식명 등을 기재			
철회 사유	※ 철회를 요청하는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라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한 것이 그 요건에 부적합하여 철회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귀하

직무관련성 심사·결정서

신청인 (재산등록 의무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등)
결정주문			
결정이유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7항 및 제14조의12에 따라 위와 같이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청인

○ ○ ○ 귀하

[] 자료제출 요구서
[] 서면질의서

직무 관련성 심사 신청인	성명 (한자 :)
	소속
	직위(직급 등) ()
	주소
질의 내용 (제출 자료)	
답변(자료제출) 기한	년 월 일 까지
답변(자료제출) 기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 제출을 요구(서면질의)합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자료제출 요구]
[[] 서면질의] 합니다.

년 월 일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청인

○ ○ ○ 귀하

신탁재산 관리상황 보고서

순번	공개대상자				위탁자				비고
	성명	소속	직위 (직급 등)	성명 (관계)	주식명	신탁 일자	수탁 가액 (천원)	변동 가액 (천원)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8제1항에 따라 당사와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공직자의 신탁재산 관리 상황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수탁기관의 장)

(인)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

기재요령

1. '소속'란 및 '직위(직급 등)'란은 최초 신탁계약 체결 시 기관명 및 직위(직급 등)를 기재하십시오. 다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전보 등 신분상의 변동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변동된 소속기관명 및 직위(직급 등)를 기재하십시오.
2. 수탁가액은 최초 신탁계약 체결 시의 금액을 기재하십시오.
3. 공개대상자와 위탁자가 다를 경우 위탁자 항목의 성명 아래에 괄호로 공개대상자와의 관계를 적으십시오.[예:(배우자)]
4. 변동가액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평가된 신탁재산액을 기재하고, 신탁재산운용보고서 등 세부내용은 별도 첨부하십시오.
5.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0제3항 후단에 따라 1월 중에 계약이 해지된 신탁재산 관리상황을 전년도의 신탁재산 관리사항에 포함하여 보고할 경우에는 변동가액은 해지 시의 금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지사유를 기재하십시오.

신탁재산(주식) [] 처분완료 사실 [] 하한가액 이하 하락 통보서

공개대상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등)				
순번	위탁자			주식명	신탁 일자	수탁 가액 (천원)	변동 가액 (천원)	처분완료 여부 (처분일)
	성명 (관계)	소속	직위 (직급 등)					
			()					
			()					
			()					
			()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8제2항에 따라 당사와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공직자의 신탁재산(주식)이 [] 처분 완료, [] 하한가액 이하로 하락 된 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탁기관의 장)

(인)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

기재요령

1. '소속'란 및 '직위(직급 등)'란은 최초 신탁계약 체결 시 기관명 및 직위(직급 등)를 기재하십시오. 다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전보 등 신분상의 변동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변동된 소속기관명 및 직위(직급 등)를 기재하십시오.
2. 공개대상자와 위탁자가 다를 경우 위탁자의 성명 아래에 괄호로 공개대상자와의 관계를 기재하십시오.[예:(배우자)]
3. 수탁가액은 최초 신탁계약 체결 시의 금액을 기재하십시오.
4. 변동가액은 처분완료 사실을 통보 시 처분금액을, 하한가액 이하 하락 통보 시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평가된 신탁재산액을 기재하십시오. 신탁재산운용보고서 등 세부내용은 별도 첨부하십시오.
5.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0제3항 후단에 따라 1월 중에 계약이 해지된 신탁재산 관리상황을 전년도의 신탁재산 관리사항에 포함하여 보고할 경우에는 변동가액은 해지 시의 금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지사유를 기재하십시오.
6. 처분완료 여부는 최초로 신탁계약체결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처분일자를 기재하십시오.

신탁재산 매각허가 신청서

신청인	성명	(한글)	소속	직위 (직급 등)	()
		(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
	주소				
신탁 내용	수탁기관				
	신탁금액				
	※ 신탁 금액은 최초 백지신탁 계약서의 금액을 기재				
신탁계약일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0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의 매각을 신청하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

선물 수령 신고서

신고인	성명(한글)	(한자)
	소속	직위(직급 등)

선물 내역

품명	규격	수량	증정인			수령일 및 장소	선물수령 경 위
			국명	직위 (직급 등)	성명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제1항에 따라 [외국정부
 외국단체
 외국인]로부터 수령한 선물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속 기관의 장

귀하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서

(앞쪽)

요청인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연 락 처	자택
	직위		휴대전화
	직급 등		전자우편주소
	퇴직일자	주소	

취업예정사실 <small>(합화에 취업하는 경우 '업체의 규모'란은 기재하지 말 것)</small>	취업예정기관 명칭	
	취업예정 직위	
	취업 후 담당업무	
	취업예정일	
	기관의 규모 (억원)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연간 외형거래액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취업제한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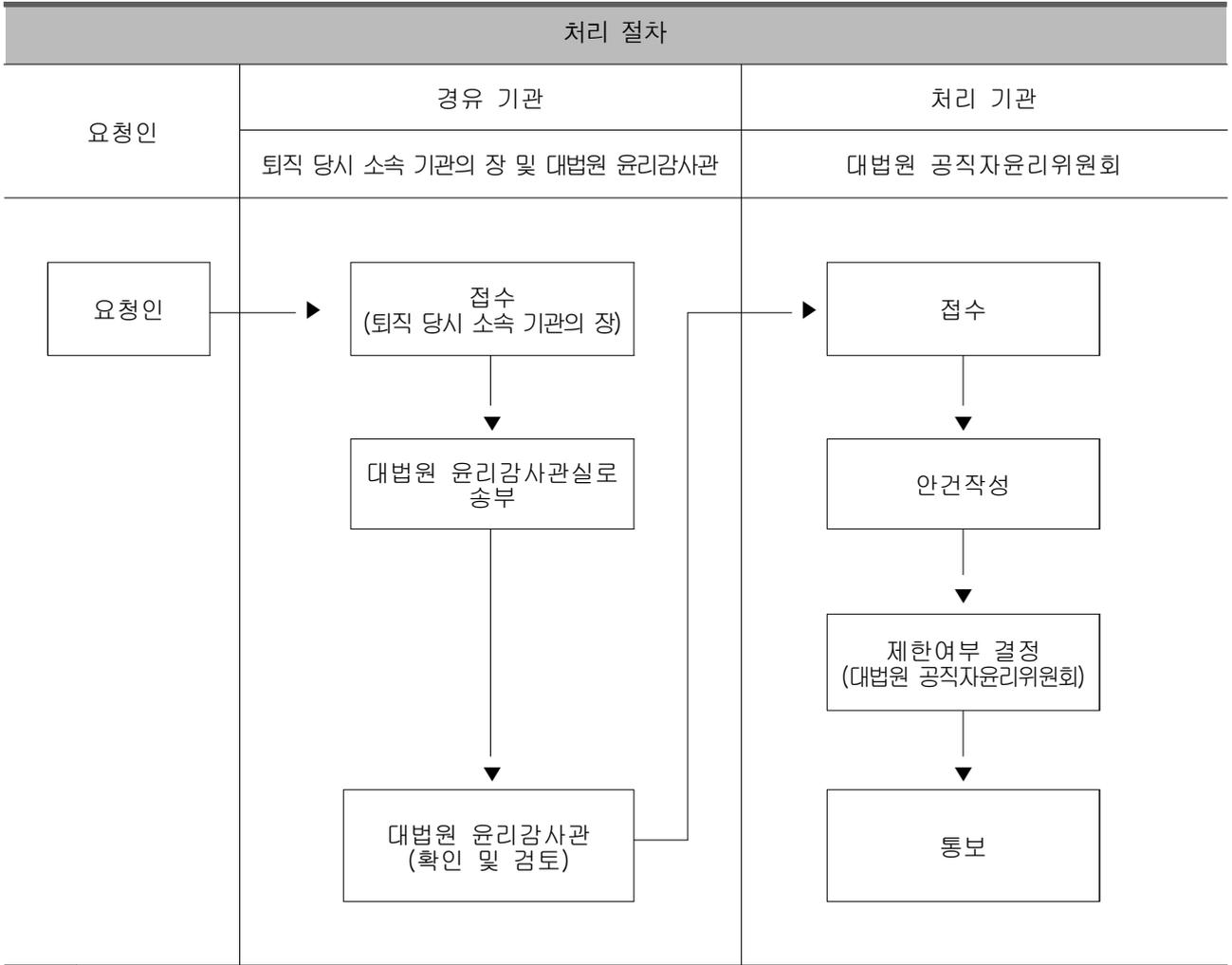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

첨부서류	1. 별지 제50호서식(취업예정확인서)을 작성하여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서와 같이 제출하십시오. 2. 취업예정기관에서 취급제한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	--

기재요령

1. 소속·직위·직급 등은 퇴직 당시의 소속·직위·직급 등을 기재하십시오.
2. 기관의 규모 작성방법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을, 제3호에서 제6호까지의 기관(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은 연간 외형거래액을, 제11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관(사회복지법인 등)은 기본재산을 기재하십시오.
3. 업무취급승인신청안내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재정보조, 인·허가, 검사·감사, 조세부과, 계약, 감독, 사건수사 등)를 취업예정기관에서 취급예정인 경우에 별지 제 54호(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와 함께 퇴직 전 소속기관에 제출하십시오.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검토 의견서

I.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자 인적 사항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소속 / 직위(직급 등) ※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직위 및 직급 등을 기재

II. 취업예정기관 및 직위 등

취업예정기관 명칭	취업업체 (예정)직위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및 외형거래액	취업예정일
주요 사업 내용 ※ 구체적으로 파악 기재	담당예정업무 ※ 구체적으로 파악 기재

III. 검토 사항

1. 취업심사대상자 해당여부

2. 취업심사대상기관 해당 여부

3.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 등 (업무분장규정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파악)

근무기간	직위(직급 등)	부서명 (기관명)	부서(기관)의 주요업무	비고

4.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 여부 (구체적으로 기재)

(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제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나)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다)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라)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마)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바)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사) 취업예정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아) 그 밖에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취업예정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가 있는지 여부

5. 해당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하였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위 제4호 각 목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업예정기관인 법무법인등·회계법인·세무법인·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또는 합작법무법인이 사건을 수임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여부

6. 해당자가 취업예정기관에 취업되었을 경우 퇴직 전 소속기관·단체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여부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이유와 적다고 보는 이유를 작성)

7. 기타 심사에 필요한 사항(퇴직 사유, 공무원 연금 수급여부, 상벌 관계,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 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 승인 심사 필요성 여부 등)

IV. 종합 검토 의견

기재요령

1. 소속·직위·직급 등은 퇴직자는 퇴직 당시의 소속·직위·직급 등을 기재하십시오.

2.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및 외형거래액 작성방법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을, 제3호에서 제6호까지의 기관(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은 연간 외형거래액을, 제11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관(사회복지법인 등)은 기본재산을 기재하십시오.

210mm×297mm[일반용지 70g/m²(재활용품)]

취업 예정 확인서

취업예정자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직급 등)	
취업예정사실 <small>(협회에 취업하는 경우 '업체의 규모'란은 기재하지 말 것)</small>	취업예정기관 명칭		
	취업예정기관 직위		
	취업예정일		
	기관의 규모 (억원)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연간 외형거래액	
작성자	연락처(사무실/휴대폰/FAX/E-mail)		

위 신청인이 해당 기관에 취업할 예정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인)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

기재요령

1. 소속·직위·직급 등은 퇴직 당시의 소속·직위·직급 등을 기재하십시오.
 2. 기관의 규모 작성방법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을, 제3호에서 제6호까지의 기관(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은 연간 외형거래액을, 제11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관(사회복지법인 등)은 기본재산을 기재하십시오.
- ※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를 위한 용도로만 활용됩니다.

우선 취업 신청서

취업예정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연 락 처	자택
	직위			휴대전화
	직급 등			전자우편주소
	퇴직일자		주소	
취업예정기관 현황	취업예정기관 명칭			
	취업예정직위			
	취업예정일			
	기관의 규모 (억원)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연간 외형거래액		
우선취업 허가 신청사유	※ 증빙서류 첨부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우선취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

기재요령

1. 소속·직위·직급 등은 퇴직 당시의 소속·직위·직급 등을 기재하십시오.
2. 기관의 규모 작성방법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을, 제3호에서 제6호까지의 기관(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은 연간 외형거래액을, 제11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관(사회복지법인 등)은 기본재산을 기재하십시오.

취업승인 신청서

신청인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연 락 처	자택
	직위		휴대전화
	직급 등		전자우편주소
	퇴직일자	주소	

취업예정사실 <small>(협회에 취업하는 경우 '업체의 규모'란은 기재하지 말 것)</small>	취업예정기관 명칭	
	취업예정직위	
	취업 후 담당업무	
	취업예정일	
	기관의 규모 (억원)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연간 외형거래액

취업승인 신청사유 (간략히 기재) 및 근거 <small>※ 공직자윤리법의 시 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에 의한 취업승인 근거 호수 기재</small>	근거
	사유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단서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취업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

첨부서류	1. 별지 제50호서식(취업예정확인서)을 작성하여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서와 같이 제출하십시오. 2. 취업예정기관에서 취급제한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	--

기재요령

1. 소속·직위·직급 등은 퇴직 당시의 소속·직위·직급 등을 기재하십시오.
2. 기관의 규모 작성방법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을, 제3호에서 제6호까지의 기관(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은 연간 외형거래액을, 제11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관(사회복지법인 등)은 기본재산을 기재하십시오.
3. 업무취급승인신청안내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재정보조, 인·허가, 검사·감사, 조세부과, 계약, 감독, 사건수사 등)를 취업예정기관에서 취급예정인 경우에 별지 제 54호(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와 함께 퇴직 전 소속기관에 제출하십시오.

취업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서

I. 취업승인 신청자 인적 사항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소속 / 직위(직급 등) ※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직위 및 직급 등을 기재

II. 취업예정기관 및 직위 등

취업예정기관 명칭	취업예정 직위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및 외형거래액	취업예정일
주요 사업 내용 ※ 구체적으로 기재	담당예정업무 ※ 구체적으로 기재

III. 검토 사항

1. 취업심사대상자 해당여부
2. 취업심사대상기관 해당 여부
3.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 등 (업무분장규정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파악)

근무기간	직위(직급 등)	부서명(기관명)	부서(기관)의 주요업무	비고

4.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사이에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제3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4조제5항에 따른 밀접한 업무관련성 여부 (구체적으로 기재)
5. 해당자가 취업예정기관에 취업되었을 경우 퇴직 전 소속기관·단체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6. 해당자의 퇴직 전 근무현황(상벌 관계)
7. 「공직자윤리법」 제18조제2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7조제3항에 따라 해당자의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작성)
8.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 승인 심사 필요성 여부
9. 기타 심사에 필요한 사항(퇴직 사유, 공무원 연금 수급여부 등)

IV. 종합 의견

기재요령

1. 소속·직위·직급 등은 퇴직자는 퇴직 당시의 소속·직위·직급 등을 기재하십시오.
2.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및 외형거래액 기재요령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을, 제3호에서 제6호까지의 기관(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은 연간 외형거래액을, 제11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관(사회복지법인 등)은 기본재산을 기재하십시오.
 - ※ 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작성도 가능합니다.

업무취급 승인신청서

신청인 인적 사항	성명	퇴직일	
	생년월일	전화번호(휴대폰)	
	퇴직 전 소속	전자우편주소	
	퇴직 전 직위 (직급 등)	주소	
취업 (예정) 사실	기관명	취업예정직위	
	취업예정일	기관의 규모 (억원)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외형거래액
		담당예정업무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	
업무취급 승인요청 사유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퇴직공직자 업무취급승인을 신청합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7조의3에 따라 퇴직공직자 업무취급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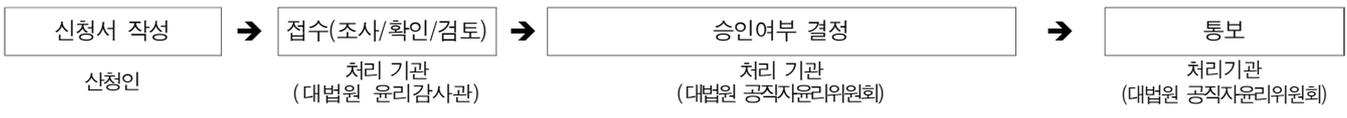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

첨부서류 별지 제50호서식(취업예정확인서)을 작성하여 업무취급승인신청서와 같이 제출하십시오.

기재요령

- 기관의 규모 작성방법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을, 제3호에서 제6호까지의 기관(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은 연간 외형거래액을, 제11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관(사회복지법인 등)은 기본재산을 기재하십시오.

처리절차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취업사실 신고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퇴직 전 소속	직위(직급 등)
	퇴직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취업사실	취업 기관명	직위(직급 등)
	취업일	취업경로

과거 취업사실	취업 기관명	직위(직급 등)	근무기간
			~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라 취업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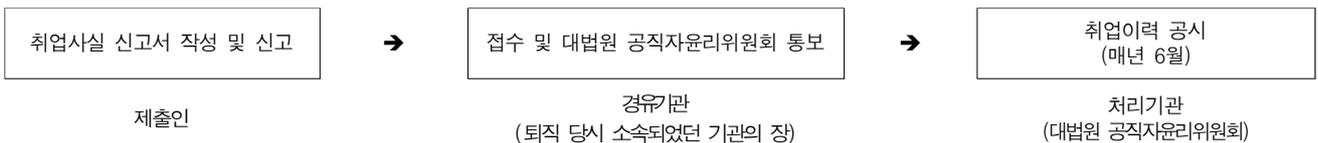
소속 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재직증명서 등 취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	------------------------------------

기재요령

1. 취업 제한여부 확인심사 및 취업승인 심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2. 과거 취업기관은 취업사실을 신고하는 기관 전에 취업하였던 모든 기관을 말하며, 해당 기관명과 직위(직급), 근무기간(취업일과 퇴직일)을 적으십시오.

업무 처리절차



취업심사대상자 퇴직 및 취업현황(년도)

1. 총괄표 (단위: 명)

기관명	조사 기준일	퇴직자 현황(명)					취업현황			
		계	해당연도 퇴직자	1년 전 퇴직자	2년 전 퇴직자	3년 전 퇴직자	계	승인	확인	임의취업

2. 해당연도 퇴직자

퇴직당시 소속기관	퇴직자 현황				연도 중 취업내용								
	직위 (직급)	성명	생년월일	퇴직 년월일	취업 기관명	취업 직위	취업 년월일	취업현황					
								계	승인	확인	임의취업		

3. 1년 전 퇴직자

퇴직당시 소속기관	퇴직자 현황				연도 중 취업내용								
	직위 (직급)	성명	생년월일	퇴직 년월일	취업 기관명	취업 직위	취업 년월일	취업현황					
								계	승인	확인	임의취업		

4. 2년 전 퇴직자

퇴직당시 소속기관	퇴직자 현황				연도 중 취업내용								
	직위 (직급)	성명	생년월일	퇴직 년월일	취업 기관명	취업 직위	취업 년월일	취업현황					
								계	승인	확인	임의취업		

5. 3년 전 퇴직자

퇴직당시 소속기관	퇴직자 현황				연도 중 취업내용								
	직위 (직급)	성명	생년월일	퇴직 년월일	취업 기관명	취업 직위	취업 년월일	취업현황					
								계	승인	확인	임의취업		

작성 요령

1. '해당 연도 퇴직자'는 조사연도 중 퇴직한 사람을 말합니다. (예 : 조사기준일이 2012. 6.30.인 경우 2012. 1. 1. ~ 2012. 6.30. 동안 퇴직한 사람)
2. '1년 전 퇴직자'는 조사연도 1년 전에 퇴직한 사람을 말합니다. (예 : 조사기준일이 2012. 6.30.인 경우 2011. 1. 1. ~ 2011. 12. 31. 동안 퇴직한 사람)
3. '2년 전 퇴직자'는 조사연도 2년 전에 퇴직한 사람을 말합니다.(예 : 조사기준일이 2012. 6.30. 인 경우 2010. 1. 1. ~ 2010. 12. 31. 동안 퇴직한 사람)
4. '3년 전 퇴직자'는 조사연도 3년 전에 퇴직한 사람을 말합니다.(예 : 조사기준일이 2012. 6.30. 인 경우 2009. 1. 1. ~ 2009. 12. 31. 동안 퇴직한 사람)
5. '취업기관명' 란에는 취업심사대상기관(영리사기업체, 법무·회계·세무 법인, 학교법인, 종합병원, 사회복지법인 등)의 명을 기재하십시오.
6. '취업현황' 란에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취업자 중 위원회 승인 또는 확인을 받고 취업한 자와 임의로 취업하여 법률을 위반한 사람을 구분하여 해당란에 ○표시를 하십시오.

연차보고 자료 (년도)

기관명	작성기준일
-----	-------

1. 재산등록의무자 현황

구분	① 전년도 등록의무자	② 신규등록자	③ 재등록자	④ 의무면제자	⑤ 퇴직자 (신고면제자 포함)	⑥ 재산등록이 관자(전입)	⑦ 재산등록이 관자(전출)	⑧ 해당연도 등 등록의무자
⑨계								
대법관등								
법원행정 처장								
법원장등								
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방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판사								
판사								
정무직								
1급 및 상 당								
2급 및 상 당								
· · ·								
비고								

기재요령

재산공개대상자는 () 안에, 임기제공무원은 < > 안에 함께 기재함.

- ① "전년도 등록의무자"란 연차보고자료 작성 기준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등록의무자임.
등록의무자 통계의 변동요인인 ② ~ ⑦ 항목은 연차보고자료 작성 기준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의 의무발생일(신분변동일)을 기준일자로 함.
- ② "신규등록자"는 신규임용, 승진으로 등록의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함.
- ③ "재등록자"는 등록의무자가 전보·강임·강등·퇴직 등에 의하여 등록의무를 면하였다가 3년(퇴직은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를 말함.
- ④ "의무면제자"는 보고서 작성 기준연도에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면서 전보·강임 등에 의하여 등록의무를 면한 사람을 말함.
- ⑤ "퇴직자"란 퇴직하여 변동신고의무가 생긴 사람과 신고면제자를 말하며 공직유관단체로 사실상 전입·전출을 한 경우는 제외함.
(신고면제자는 '비고'란에 "신고면제 : ○명"으로 표기)
등록의무자가 공무원을 퇴직하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등록대상인 경우)으로 갔을 때는 ⑦재산등록이관자(전출)의 해당 직급 등의 란과 ⑥재산등록이관자(전입)의 '공직유관단체'란에 동시 기재하며, 그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동시 기재함.
- ⑥ "해당 연도 등록의무자"란 연차보고자료 작성기준연도의 12월 31일 현재의 등록의무자이며, 그 다음 해 1월 중 정기변동신고 대상자 수를 '비고'란에 기재함.
- ⑨ '계'란은 (①+②+③+⑥) - (④+⑤+⑦) = ⑧해당연도 등록의무자라는 등식이 성립됨을 원칙으로 하되, 불일치의 경우는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함.
- ⑩ '특정직'란은 일반직 직급에 준하여 직급 구분이 가능한 직종(예 : 연구관, 지도관, 장학관등)은 직급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일반직 직급과 다른 검사·군인·경찰·소방공무원은 직종별 계급체계에 맞추어 구분하여 기재함.

※ ② ~ ⑦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의 양식에 따라 그 명단을 제출해야 함.

가. 신규등록자

소속	직위 (직급 등)	성명	신규등록사유	의무발생일

나. 재등록자

소속	직위 (직급 등)	성명	직전 신분		의무발생일
			소속	직위(직급 등)	

다. 의무면제자

소속	직위 (직급 등)	성명	의무면제사유	신분발생일

라. 퇴직자(신고면제자 포함)

소속	직위 (직급 등)	성명	의무발생일	비고

※ 신고면제자는 '비고'란에 사망 등 사유 기재

마. 재산등록이관자(전입)

소속	직위 (직급 등)	성명	전입 전 신분		전입일자
			소속	직위	

바. 재산등록이관자(전출)

소속	직위 (직급 등)	성명	전출 후 신분		전출일자
			소속	직위	

2. 등록사항 심사현황

구분		계	① 정기변동 신고자	② 신규 등록자	③ 재등록자	④ 의무면제자	⑤ 퇴직자
⑥ 심사대상							
심사 결과	⑦ 이상없음						
	⑧ 보완명령						
	⑨ 심사결과의 처리요구						
심사 내용	⑩ 소명서 요청						
	⑪ 출장조사						
	⑫ 개별자료 요청						
	⑬ 출석요구						
	⑭ 조사의뢰						
	⑮ 금융조회						

기재요령

작성대상은 비공개자 중 그 기관에 심사가 위임된 사람이며, 1명에 대하여 신규등록·퇴직 및 의무면제 등이 중복될 경우 각각 심사대상으로 기재함.

- ⑦ 이상 없음 : 재산심사 결과 이상이 없거나, 실무종결 처리한 사람
 - ⑧ 보완 명령 :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누락하거나 가액 합산 등에 오기가 있다고 인정하여 보완을 명한 사람
 - ⑨ 심사결과의 처리요구 : 법 제8조의2에 따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한 사람
 - ⑩ 소명서 요청 : 구두(전화) 또는 심사기관장 명의의 서면으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람이며 단순한 확인 또는 증빙서 제출은 제외
 - ⑪ 출장 조사 : 물건 소재지나 그 밖에 등록재산 관계 및 소명서 진술내용의 진위 등 사실 확인을 위한 현지출장 조사대상이 된 사람
 - ⑫ 개별자료 요청 :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각급 기관(금융기관 제외)에 심사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람(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국세청 등에 일괄하여 부동산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는 제외)
 - ⑬ 출석 요구 : 등록의무자나 그 밖의 재산등록관계인의 출석진술을 요구한 사람이며 단순히 자료 제출을 위한 출석은 제외
 - ⑭ 조사 의뢰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조사 의뢰 승인요청을 한 사람
 - ⑮ 금융 조회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금융조회 승인요청을 한 사람
- ※ ⑧과 ⑨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양식에 따라 그 명단을 제출해야 함.

가. 보완 명령자

소속	직위 직급 등)	성명	보완요구내용	비고

※ '보완요구내용'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보완조치를 한 부실등록내용 및 보완요구 내용을 기재

나. 심사결과의 처리요구자

소속	직위 (직급 등)	성명	위반내용	조치요구 내용	윤리위 결정	비고

※ '조치요구 내용'란은 법 제8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치 중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요구한 내용을 기재하고 '윤리위결정'란은 공직자 윤리 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기재

3. 기간 연장자

소속	직위 (직급 등)	성명	연장기간(일수)	연장사유

※ 작성기준일 현재 「공직자윤리법」 제7조에 따라 등록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을 작성대상으로 함.

4. 고지거부 현황

계	직계존속·직계비속 모두 고지거부	직계존속만 고지거부	직계비속만 고지거부

◦ 작성대상은 비공개자 중 그 기관에 심사가 위임된 사람 중 최초등록, 변동신고를 구분하지 않고 작성기준일 현재 고지거부 중에 있는 사람으로 함(퇴직자 등 작성일 현재 등록의무자가 아닌 경우 제외).

◦ 고지 거부한 직계존속·직계비속 인원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고지 거부한 재산등록의무자 수를 기재

5. 등록서류 열람·복사 현황

구분	열람		복사		계		비고
	신청	허가	신청	허가	신청	허가	
본인 신청							
본인 외 신청							

6. 재산변동사항 신고 유예자 현황

가. 계급별

구분	전년도 말 유예자 수	해당 연도 말 유예자 수	해당 연도 변동	
			증가	감소
계				
대법관등				
법원행정처장				
법원장등				
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방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판사				
판사				
정무직				
1급 및 상당				
2급 및 상당				
3급 및 상당				
4급 및 상당				
5급 및 상당				
비고				

※ 재산공개대상자의 수는 () 안에, 임기제공무원의 수는 < > 안에 각각 함께 기재함.

나. 기간별·사유별

유예 연수 별				유예 사유별						비고
계	1년	2년	3년	계	재외공관 근무	해외주재 사무소 근무	교육파견	휴직	기타	

◦ 작성기준일 현재 유예자를 대상으로 하고, '휴직'란도 유형별로 정리하여 기재함

7. 그 밖의 의견 또는 건의사항

해임·징계 의결 요구서

인적사항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직위(직급 등)
	소속	주소
해임·징계 의결 요구 사유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2항제4호, 제14조의5제11항제3호 또는 제22조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4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임·징계 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직인

법원행정처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생략)</p> <p>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1. 2. (생략)</p> <p><u><신설></u></p> <p>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p> <p>4.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p> <p>③ ~ ⑤ (생략)</p> <p>제13조(변동사항 신고) ①·② (생략)</p> <p>③ 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른 주식변동사항신고서는 <u>별지 제9호 서식</u>에 따른다.</p>	<p>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u>법 제14조의5제11항에 따른 조치</u></p> <p>4. (현행 제3호와 같음)</p> <p>5. (현행 제4호와 같음)</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제13조(변동사항 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별지 제9호 서식</u>, <u>가상자산변동사항신고서</u>는 <u>별지 제9호의2서식</u>-----.</p>

의 자료 제출은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 ① 위원회 또는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등을 디스켓·디스크에 입력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위원회는 법 제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나 이해관계자의 동의서를 금융기관의 장 등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디스켓·디스크에 입력하여 제출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설>

③ 위원회 또는 법원행정처장은

-----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8호의 2서식-----.

제15조(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 ① -----

-----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

1. ~ 3. (현행과 같음)

② -----

-----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

③ 소속기관의 장은 공직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물 신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

관계 기관·단체의 장이 법 제19조의2 제2항 또는 이 규칙 제38조 제2항에 따라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등을 디스켓·디스크에 입력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퇴직공직자가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등을 디스켓·디스크에 입력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략)

제22조(금융거래의 조회)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 중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르고,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며, 입출금 거래명세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르고,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34조(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

⑤ -----

-----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

1. ~ 3. (현행과 같음)

제22조(금융거래의 조회) -----

-----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제8호의2서식 -----

-----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제19호의2서식 -----.

제34조(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① 삭제

②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이하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 한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신설>

2. ~ 4. (생략)

③ ~ ⑤ (생략)

⑥ 삭제

⑦ (생략)

⑧ 삭제

제40조(징계의결요구 및 처리결과통보) ① 법 제8조의2제2항제4호 및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는 별지 제61호 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8조의2제2항 제4호 및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은 법원행정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략)

및 범위)

② -----

-----.

1. (현행과 같음)

1의2.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2. ~ 4.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제40조(징계의결요구 및 처리결과통보) ① 법 제8조의2제2항제4호, 법 제14조의5제11항제3호 및 제22조-----
-----.

② 법 제8조의2제2항제4호, 법 제14조의5제11항제3호 및 제22조-----

-----.

③ (현행과 같음)

< 소관 부서명 >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윤리감사제1심의담당관	
연락처	(02) 3480 - 1568